

#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마련 연구—

2023. 8.





#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마련 연구—

2023. 8.





▶ 제출문 ▶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8월

국토연구원 원장 심 교 언



## ▶ 참여 연구진 ▶

연구 책임	국토연구원	최예술 부연구위원
연구진	국토연구원	남기찬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김경민 전문연구원



##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	4
3. 연구의 주요 내용 .....	6
4.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	8

## II. 이전공공기관 관련 법·제도 현황

1. 분석 개요 .....	13
2. (법령) 「혁신도시법」 과 동법 시행령 내용 분석 .....	3 1
3. (지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내용 분석 .....	8 1
4. 소결 .....	23

## III.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현황 및 사례 분석

1. 지방이전계획 변경 및 사후관리방안 관련 사례분석 방법론 .....	7 2
2. 지방이전계획의 기존 변경 사례 검토 .....	82
3. 지방이전계획 변경 및 사후관리방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3 6
4. 법령 및 지침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7 6

## IV. 현행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

1.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제도의 필요성 .....	3 7
2.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의 변경사항 문제 .....	4 7
3.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의 절차적 문제점 .....	8 7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의 이슈 .....	8
5. 관리카드 작성상의 이슈 .....	8
6. 소결 : 현행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 .....	2 8

## V.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개선 방향 및 법령·지침 개정(안)

1.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방향 .....5·8
2. 법령 및 지침 개정(안) ..... 8

## 참고문헌

## 부록

1.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관계기관 담당자 의견수렴 개요
2. 사후관리 지침(안) 관련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의견수렴 개요

표 II-1   「혁신도시법」 과 동법 시행령의 체계 .....	4	1
표 II-2   「혁신도시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	5	1
표 II-3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	6	1
표 II-4   (지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2015.10.14.9) .....	9	1
표 II-5   지침 내 “이전 후 지방이전계획의 변경절차” 내용 .....	10	2
표 II-6   지침 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	11	2
표 II-7   지침 내 “기관간 협조사항” 내용 .....	11	2
표 II-8   지침 내 “주요 이전현황 정기보고” 내용 .....	21	2
표 III-1   이전비용 변경 현황 .....	23	
표 III-2   이전비용 세부항목 변경 현황 .....	4	3
표 III-3   이전비용 변경 현황(이전시기 이전 변경) .....	3	4
표 III-4   이전비용 변경 현황(이전시기 이후 변경) .....	4	4
표 III-5   이전비용 세부항목 변경 현황(이전시기 이전 변경) .....	5	4
표 III-6   이전비용 세부항목 변경 현황(이전시기 이후 변경) .....	6	4
표 III-7   최종 승인된 지방이전계획과 현재 현황의 상이 사항 및 사유 .....	8	5
표 IV-1   현행 지방이전계획의 주요 사항 .....	4	7
표 IV-2   현행 공간영역의 이슈 .....	77	
표 IV-3   현행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 .....	2	8
표 V-1   「혁신도시법」 개정(안) .....	1	9
표 V-2   사후관리 지침 개정(안) .....	8	9
표 V-3   이전완료 공공기관 현황 제출 양식 개선(안) .....	30	1

그림 I-1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2019년 12월 기준) .....	4
그림 I-2   연구 흐름도 .....	8
그림 I-3   연구 추진체계 .....	9
그림 II-1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혁신도시법」 제4조) .....	5
그림 II-2   지침 내 “주요 이전현황 정기보고”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 내용 .....	2
그림 III-1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사례분석 틀 .....	7
그림 III-2   지방이전계획 변경횟수 .....	9
그림 III-3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연도별 변경건수 .....	0
그림 III-4   지방이전계획 이전시기 변경 현황 .....	1
그림 III-5   이전비용 변경 비율별 분포 .....	2
그림 III-6   이전인원 대비 직원숙소 규모 변경비율 분포 .....	5
그림 III-7   이전인원 대비 임시사택 규모 변경비율 분포 .....	5
그림 III-8   이전인원 대비 임시사택 규모 비율 분포 .....	6
그림 III-9   이전시설 규모 변경 비율별 분포 .....	6
그림 III-10   잔류인원 변경 비율별 분포 .....	8
그림 III-11   지방이전계획 이전시기 변경 현황(이전시기 이전 변경) .....	2
그림 III-12   지방이전계획 이전시기 변경 현황(이전시기 이후 변경) .....	2
그림 III-13   이전비용 변경 비율별 분포(이전시기 이전 변경) .....	3
그림 III-14   이전비용 변경 비율별 분포(이전시기 이후 변경) .....	4
그림 III-15   이전인원 대비 직원숙소 규모 변경비율 분포(이전시기 이전 변경) .....	7
그림 III-16   이전인원 대비 직원숙소 규모 변경비율 분포(이전시기 이후 변경) .....	8
그림 III-17   이전인원 대비 임시사택 규모 변경비율 분포(이전시기 이전 변경) .....	8
그림 III-18   이전인원 대비 임시사택 규모 변경비율 분포(이전시기 이후 변경) .....	9
그림 III-19   이전인원 대비 임시사택 규모 비율 분포(이전시기 이전 변경) .....	9
그림 III-20   이전인원 대비 임시사택 규모 비율 분포(이전시기 이후 변경) .....	0
그림 III-21   이전시설 규모 변경 비율별 분포(이전시기 이전 변경) .....	1
그림 III-22   이전시설 규모 변경 비율별 분포(이전시기 이후 변경) .....	1
그림 III-23   잔류인원 변경 비율별 분포(이전시기 이전 변경) .....	3
그림 III-24   잔류인원 변경 비율별 분포(이전시기 이후 변경)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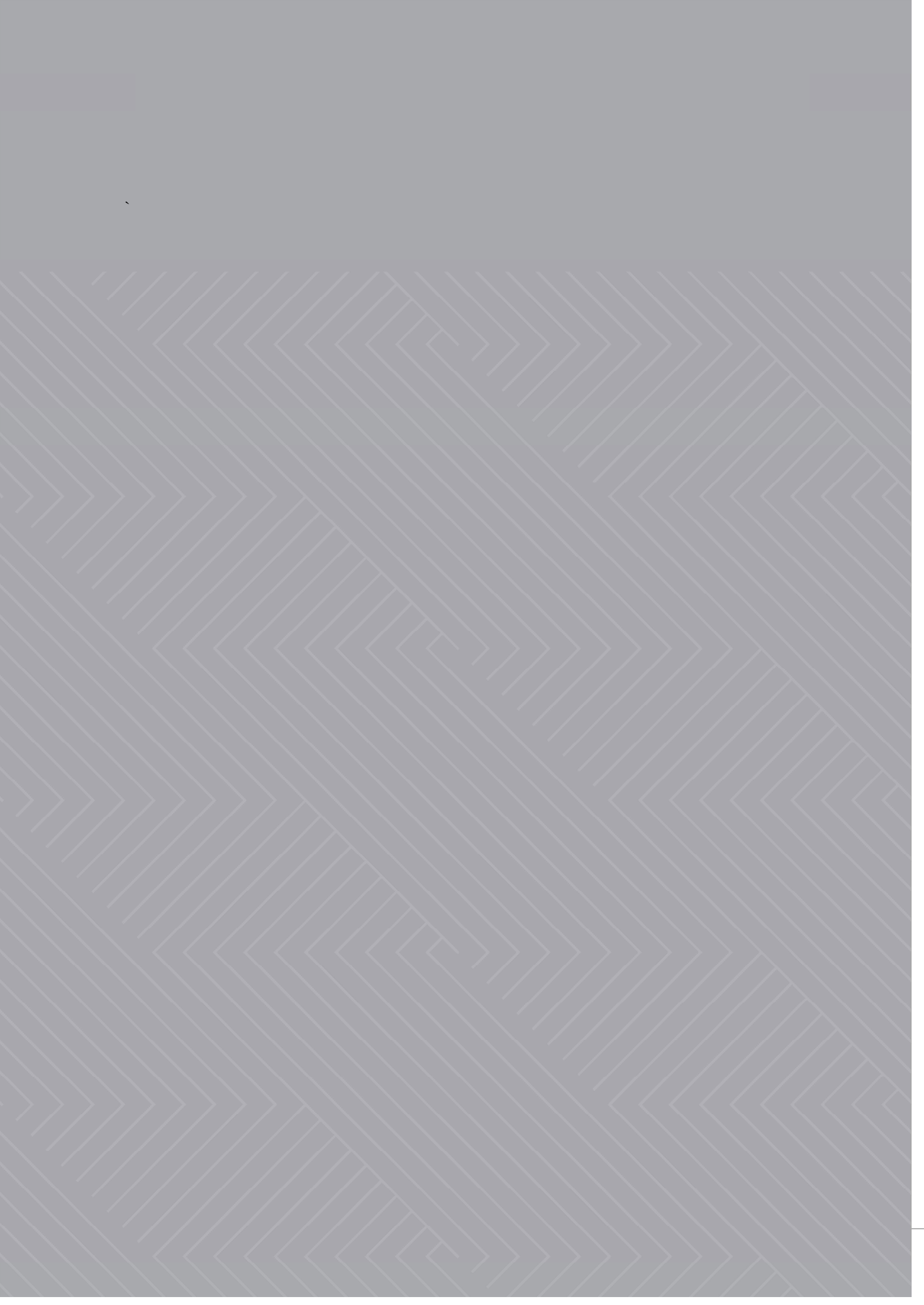


PART

#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4
3. 연구의 주요 내용	6
4.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연구의 배경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4조에 의해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함
- 「혁신도시법」 제4조는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을 다루고 있으나, 이는 지방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지방이전 이후의 공공기관의 운영 관리에 대한 항목과 절차가 현행 법령에 부재한 탓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지침을 마련하여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 등을 마련
-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고, 지침에서는 지방이전을 완료한 이후에도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계획할 당시에 수립한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따른 모순이 발생
- 또한 지침 내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고 불분명한 탓에 통상적인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경미한 변경에도 지방이전계획 변경 신청이 쇄도하여 기관들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
- 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달성함과 동시에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 연구의 목적

- 이전공공기관 관련 법·지침\* 검토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변경 현황 분석을 토대로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관련 현행 법·지침상 문제점 및 대안을 도출하고,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 「혁신도시법」 과 동법 시행령, (지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 방안('15.10월)

## 2.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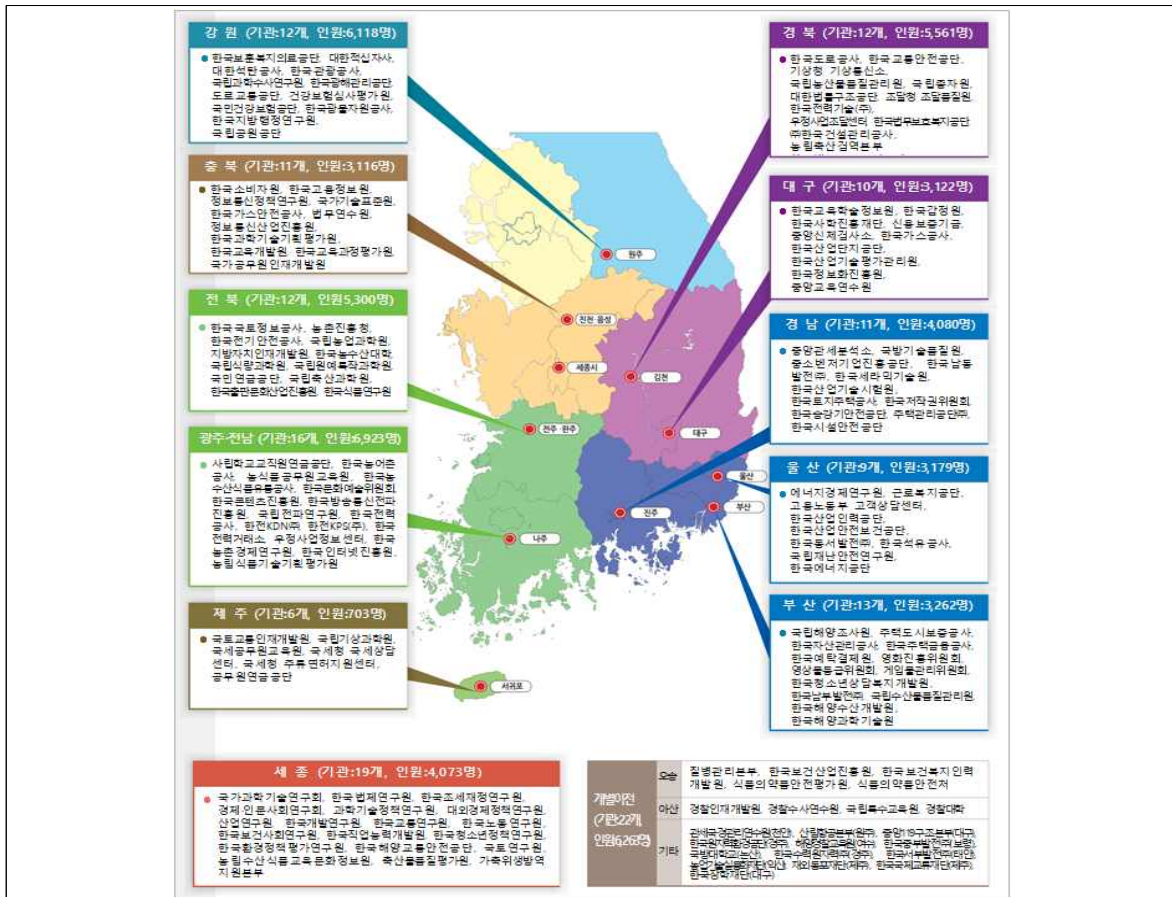
### □ 시간적 범위

- 이전완료 공공기관별로 지방이전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시점부터 2022년 말\*까지 설정
  - ※ 주요 지방이전계획의 변경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연말 기준으로 다음 해 초에 취합)’를 고려

### □ 공간적 범위

- 「혁신도시법」에 의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함
  - 혁신도시 112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2개 총 153개(이후 기관통합으로 151개)

그림 I-1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2019년 12월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2019.12.1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 내용적 범위

- 이전공공기관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사례분석
- 현행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개선 방향 및 법령·지침 개정(안)

### 3. 연구의 주요 내용

#### □ 이전공공기관 관련 법령·지침 검토

- (법령) 「혁신도시법」 과 동법 시행령 내용 검토
- (지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15.10)’ 내용 검토
  - ①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범위,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범위, ④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

####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현황 및 사례 분석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최초 지방이전계획 승인 후 변경내역에 관한 현황 분석
  - 시기를 전체, 지방이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지방이전계획 변경내역에 대한 현황 분석
  - 경미한 변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사례분석
- 이전완료 공공기관, 소관부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식 관련 이슈 도출

#### □ 현행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 검토

- 지방이전계획 변경 사례 및 이전공공기관 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에 기초해 문제점 및 대안 검토
  - (사후관리 방식 개선의 필요성)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계획할 당시 수립한 ‘지방이전계획’을 이전 완료 후에 계속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 (법령)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부재,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의 준용 등에 대한 이슈 및 대안 검토
  - (지침)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심의가 필요

하지 않은 사항의 범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관리카드 작성 항목 등에 대한  
이슈 및 대안 검토

□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개선 방향 및 법령·지침 개정(안) 마련

○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방향 제시

- (사전관리) 이전 예정 또는 이전 중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지방이전계획 수립·변경 절차 적용
- (사후관리)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을 적절하게 개선하여 적용

○ 법령 및 지침 개정(안) 마련

- (법령)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항목 규정한 법령 개정(안) 제시
- (지침) 지침 개정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관련 항목 범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관리카드 작성 항목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제시

## 4.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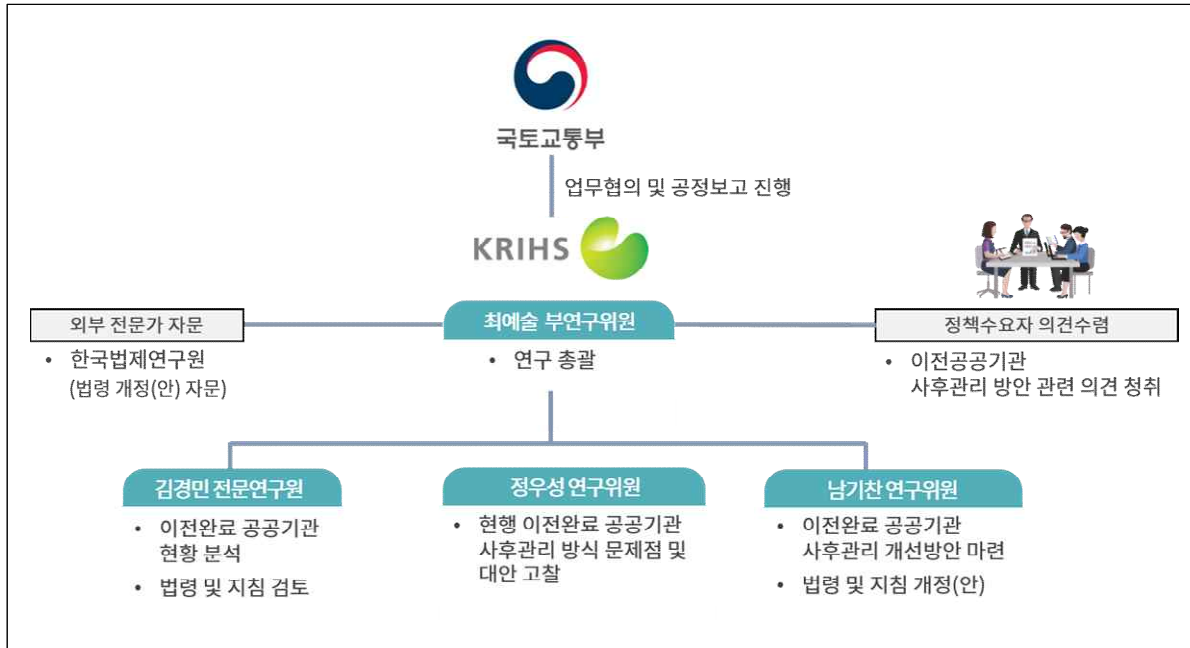
### 1) 연구의 흐름

그림 I-2 | 연구 흐름도



## 2) 연구의 추진체계

그림 I-3 | 연구 추진체계



## 3) 연구의 추진일정

연구내용	공정(개월)						
	1	2	3	4	5	6	
1. 이전공공기관 관련 법·제도 현황	■						
2.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현황 및 사례분석	■						
3. 현행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		■					
4.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개선 방향				■			
5. 사후관리 방안 제도화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안) 마련				■			
6. 최종보고서 작성						■	
보고일정	착수보고 (3월)			중간보고 (6월)		최종보고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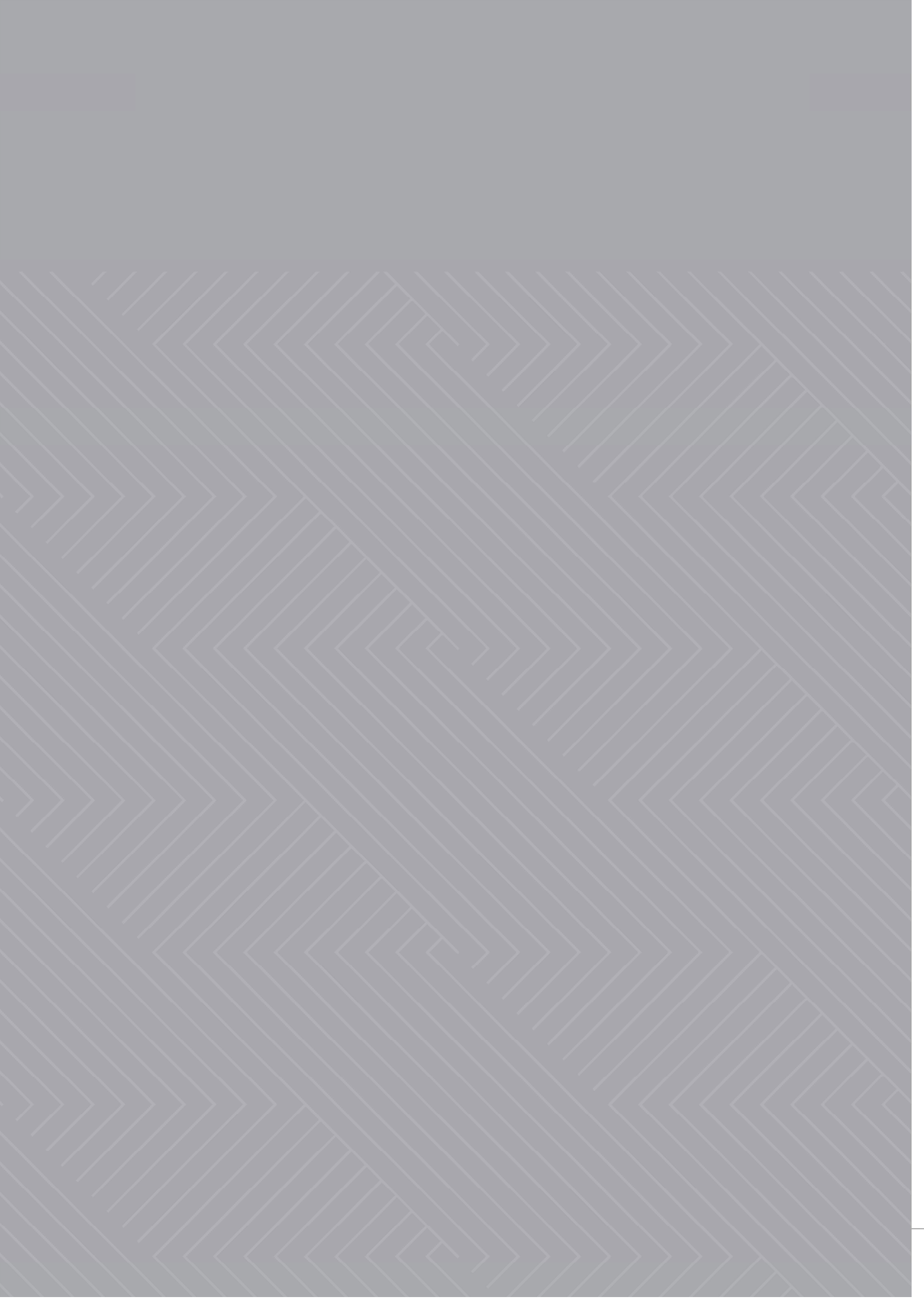


PART

## 이전공공기관 관련 법·제도 현황



1. 분석 개요	13
2. (법령) 「혁신도시법」 과 동법 시행령 내용 분석	13
3. (지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내용 분석	18
4. 소결	23



## 1. 분석 개요

-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법령으로는 「혁신도시법」 과 동법 시행령이 있으며, 지침으로는 국토부가 2015년 10월에 마련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이 있음
- 본 장에서는 (법령) 「혁신도시법」 과 동법 시행령, (지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함

## 2. (법령) 「혁신도시법」 과 동법 시행령 내용 분석

### 1) 「혁신도시법」 개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입지선정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사안들을 규정하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 )」 을 제정·시행(2007.2.12. 시행)
- (제1조(목적)) 「혁신도시법」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제2조(정의))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이전공공기관 :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을 의미
    - \* 제2조(이전공공기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 혁신도시 :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의미

## 2) 지방이전계획 변경에 관한 법령의 체계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과 관련한 법령은 「혁신도시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해당함
  - ( 「혁신도시법」 제4조)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
  -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할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규정

표 II-1 | 「혁신도시법」 과 동법 시행령의 체계

구분		내용
「혁신도시법」 및 동법 시행령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법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기술</li> </ul>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내용</li> <li>-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내용</li> </ul>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행위에 관한 내용</li> </ul>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li> </ul>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li> </ul>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부동산 현황조사, 증·개축 등의 제한, 처리계획 수립, 매입지원 등에 관한 내용</li> </ul>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li> </ul>
	제8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보칙에 관한 내용</li> </ul>
제9장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벌칙에 관한 내용</li> </ul>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년 7월 31일 검색)

### 3)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법령 내용 분석

#### (1)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혁신도시법」 제4조)

- (「혁신도시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방이전계획의 구성요소, 목적,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를 규정
- (「혁신도시법」 제4조 제3항)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를 규정
  - (변경절차)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의 규모 및 범위, 이전시기, 이전비용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함
  - (예외사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

그림 II-1 |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혁신도시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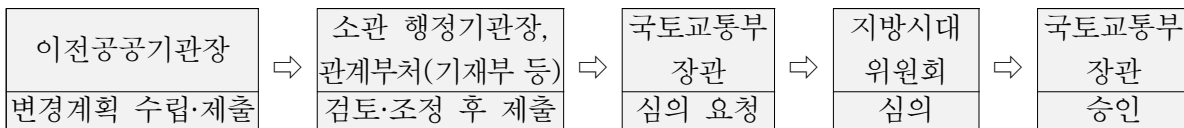


표 II-2 | 「혁신도시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p><b>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b>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6. 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li> <li>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li> <li>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p> <p><b>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p> <p>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b>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b> &lt;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8. 3. 20., 2020. 6. 9., 2023. 6. 9.&gt;</p>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년 7월 31일 검색)

- (2) 지방이전계획 변경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혁신도시법」 제4조 제4항) 지방이전계획 변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
    - (기관명)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이전시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 (이전비용)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직원숙소·임시사택) ① 신축·매입·임차예산을 확보하여 변경승인 요청 ② 변경 규모가 이전인원의 10% 이내인 경우, ③ 지역위에 보고된 직원숙소·임시사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직원숙소 : 現 수도권 숙소 또는 순환근무자 수 중 큰 숫자 → 직원 수용규모 합계가 지방이전하기 전에 운영하던 숙소 규모와 최근 3년간 평균 순환근무자\* 수 중 큰 값 이내<sup>1)</sup> /임시사택: 이전인원의 40% 이내)
      - \* 순환근무자 보직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본사 전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이전시설) 승인받은 이전시설의 규모를 10% 범위 내에서 변경

표 II-3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p><b>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b>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li> <li>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li> <li>3. 사무소 부지매입비·신축비·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li> <li>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li> <li>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b>②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 &lt;개정 2008. 2. 29.,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li> </ol>
---

1) 국토교통부(2021.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 기준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14.5.8 방침)**

5. (직원숙소·임시사택) ① 신축·매입·임차예산을 확보하여 변경승인 요청 ② 변경규모가 이전 인원의 10% 이내인 경우, ③ 지역위에 보고된 직원숙소·임시사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직원숙소 : 現 수도권 숙소 또는 순환근무자 수 중 큰 숫자/임시사택: 이전인원의 40% 이내)

6. (이전시설) 승인받은 이전시설의 규모를 10% 범위 내에서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년 7월 31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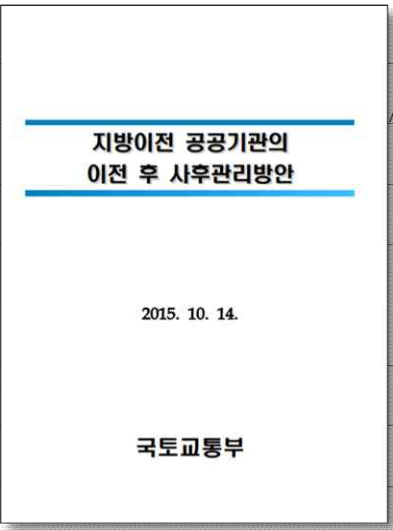
### 3. (지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내용 분석

####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개요

- (추진 배경) 지방이전을 추진 중이거나, 이전한 공공기관이 당초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또는 지방이전을 마무리한 기관 중 불가피하게 이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
  - 이전현황을 조사('15.4)한 결과,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기관의 비율이 '14년 대비 7.5%p 증가(64.8%→72.3%)
- 또한 지방이전을 마친 기관 중에서 불가피하게 이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절차에 대한 문의가 지속 증가
  - 지방이전을 마친 후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가 없어 몇몇 기관의 경우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는 이전계획과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도 오해의 소지 존재
- (필요성) 지방이전 기관이 당초 승인된 지방이전계획과 다르게 운영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변경절차를 마련할 필요('15.5.28 제14차 지역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보고)
- (상이한 주요 원인) 지방이전 기관이 당초 승인된 지방이전 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수도권 조직 신설, 업무용 부동산 신규 취득, 종전부동산을 국책사업에 활용 등이 있음
  - (수도권 조직 신설) 수도권을 관할하는 업무조직 신설 등의 사유로, 수도권 잔류 인원을 늘리거나, 승인받지 않고 잔류
    - ※ 총 35개 기관 1,668명이 수도권 관할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수도권 잔류기준에 따라 잔류 승인을 받음('15년 6월 말 기준)
  - (업무용 부동산 신규취득) 지방이전계획 변경 없이 수도권 잔류인원의 근무 편의를 위해, 사무실·스마트워크센터 용도의 부동산을 임의 취득
    - ※ 수도권 잔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잔류인원은 사무공간을 승인받아야 함(예. 종전부동산 일부를 매각 제외, 사무실 임차)
  - (종전부동산을 국책사업에 활용) 매각 대상인 종전부동산을 국책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
    - ※ 매각 대상인 ○○공사의 종전부동산을 문화창조벤처단지로 활용

- (기타) 조직개편으로 단순히 이전인원이 증감되거나, 설계변경에 따라 시설 면적의 증감, 이전시기 일부 지연 등
  - ※ 신축청사를 건축하는 동안 조직인원이 증가하여 업무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일부 조직의 이전을 지연
- (지침 주요 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이전기관이 해당 지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2015년 10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지침을 수립·운영
  - (기본원칙) ①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이전기관이 해당 지역에 조기 정착하도록 함<sup>2)</sup> ②법령개정, 조직개편, 정부공식회의 결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③수도권에 조직신설, 잔류인원 증가, 신규 부동산 임차는 사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은 관계부처(소관부처, 기재부 등)와 협의
  - (개선방안) 주요 이전현황 정기보고, 이전 후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기관간 협조사항 등을 명시

표 II-4 | (지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2015.10.14.)

	<p>[주요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 배경</li> <li>- 그간의 추진경과</li> <li>- 상이한 주요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에 조직 신설</li> <li>· 업무용 부동산 신규취득</li> <li>· 종전부동산을 국책사업에 활용 등</li> </ul> </li> </ul> </li> <li>2.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이전현황 정기보고</li> <li>- 이전 후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li> <li>-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li> <li>- 기관간 협조사항</li> </ul> </li> </o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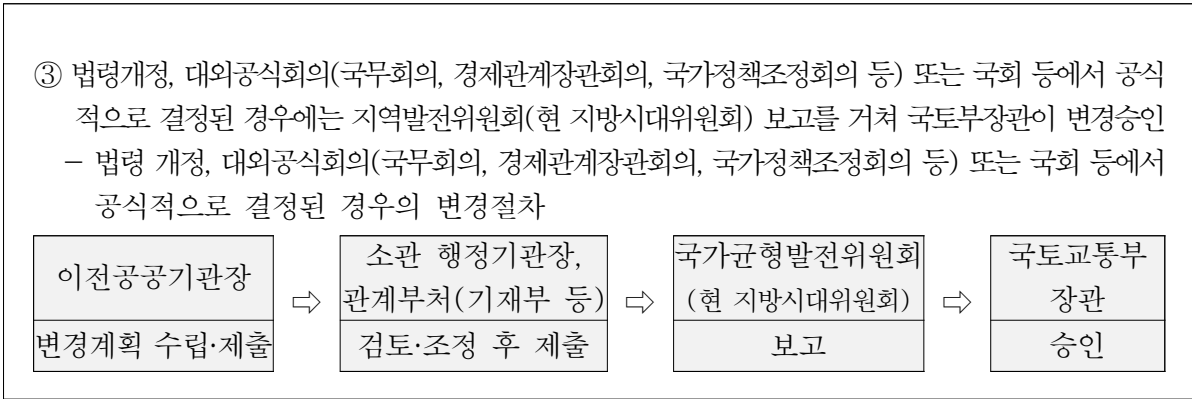
2) 운영기간은 시행 효과를 확인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2)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지침 내용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지침 내 지방이전계획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 분석
  - 지침 내 개선방안에서 ①주요 이전현황 정기보고, ②이전 후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 ③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④기관간 협조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1) 지방이전계획 변경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지침 내 “이전 후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에서 수도권 잔류 관련 인원, 조직, 시설의 변경 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으로 규정
  - 지방이전 후 지방이전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한 대상, 내용(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수도권 잔류 관련 중대한 사항),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

표 II-5 | 지침 내 “이전 후 지방이전계획의 변경절차” 내용

[변경대상]										
이전한 기관 중 당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현저히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										
※ 기관명칭, 조직정원, 이주수당 등의 단순변경은 이전계획 변경대상에서 제외										
[변경내용]										
인원	수도권에 신규 인원잔류, 기존 잔류인원의 증가, 잔류업무의 변경, 수도권에 직원을 1년 이상 장기과견 또는 출장 등									
조직	수도권에 조직 신설, 기존 잔류조직의 변경, 수도권·서울사무소 설치 등									
시설	수도권에 사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등) 등의 신축임대, 잔류 부동산 시설의 신축·증축·매각제외, 수도권에 직원숙소의 신축·임대									
[변경절차]										
① 해당기관에서 지방이전계획 변경(안)(「혁신도시법」 제4조) 및 지방이전계획 변경요청 내역을 작성하여 기재부(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지자체와 사전협의 후 소관부처에 보고										
② 소관부처에서 국토부에 변경을 요청하면 지역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승인 통보										
* ‘경미한 변경’(「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생략										
-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수도권 잔류 관련 변경사항)										
이전공공기관장 변경계획 수립	⇨	기재부, 지자체 사전협의	⇨	소관 행정기관장 검토·조정 후 제출	⇨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 요청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자료: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15.10.14.)

## (2) 지방이전계획을 미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 지침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지방이전계획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운영 중인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 - 시정요청, 현장점검 실시, 감사원 통보, 정원·예산 협의시 불이익 조치 등

표 II-6 | 지침 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임의 운영 중인 경우에는 시정요청(국토부→소관부처→이전기관)</li> <li><input type="checkbox"/> 필요할 경우 이전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li> <li><input type="checkbox"/> 시정요청에도 시정하지 않는 기관은 감사원 통보, 정원·예산 협의시 불이익 조치(국토부·기재부·소관부처 공동)</li> </ul>
---

자료: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15.10.14.)

- 지침에서는 “기관간 협조사항”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소관부처 간 협조사항을 명시

표 II-7 | 지침 내 “기관간 협조사항” 내용

<p>(국토교통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이전기관 정기보고(‘지방이전현황’) 자료와 시정요청 사항을 기재부·소관부처에 통보 및 공유</li> <li><input type="checkbox"/>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예산·정원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시정요청 사항을 이행 여부 확인 - 시정요청 사항이 미이행된 경우 예산·정원 협의시 불이익 조치</li> </ul>
--

자료: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15.10.14.)

(3) 관리카드 등 기타 항목(지침 내 “주요 이전현황 정기보고”)

- 지침에서는 “주요 이전현황 정기보고”를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은 매년 말 주요 지방 이전현황을 소관부처에 보고하고 소관부처는 이를 국토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제출사항) ①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②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 ③소관 행정기관별 공공기관 수도권잔류 해소 추진현황

표 II-8 | 지침 내 “주요 이전현황 정기보고” 내용

<input type="checkbox"/> 대상 :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방이전한 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고내용 : 최종 승인받은 이전계획과 달라진 조직·인원·이전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보고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지방이전현황을 매년 말 소관부처에 보고</li> <li>- 소관부처에서 국토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제출</li> </ul>
--

자료: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15.10.14.)

그림 II-2 | 지침 내 “주요 이전현황 정기보고”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 내용

정기보고 제출 양식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지방이전 현황 [기관명/이전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input type="checkbox"/> 이전현황</td> </tr>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기 승인 원용(100.00.00)</th> <th style="width: 25%;">현 이전원용</th> <th style="width: 25%;">비고</th> </tr> <tr><td>이전지역</td><td></td><td></td><td></td></tr> <tr><td>이전방법(신축/증자/재입)</td><td></td><td></td><td></td></tr> <tr><td>이전인원(명)</td><td></td><td></td><td></td></tr> <tr><td>잔류인원(명)</td><td></td><td></td><td></td></tr> <tr><td>이전부지(㎡)</td><td></td><td></td><td></td></tr> <tr><td>이전시설(㎡)</td><td></td><td></td><td></td></tr> <tr><td>- 업무시설</td><td></td><td></td><td></td></tr> <tr><td>- 특수시설</td><td></td><td></td><td></td></tr> <tr><td>- 기타시설</td><td></td><td></td><td></td></tr> <tr><td>이전비용(억원)</td><td></td><td></td><td></td></tr> <tr><td>- 공사건축비(유지비 포함)</td><td></td><td></td><td></td></tr> <tr><td>- 행사임차보증금(관리비 포함)</td><td></td><td></td><td></td></tr> <tr><td>- 이주지원비</td><td></td><td></td><td></td></tr> <tr><td>- 이사비(기관, 개인)</td><td></td><td></td><td></td></tr> <tr><td>- 숙소 건축/세입비</td><td></td><td></td><td></td></tr> <tr><td>재산조달방법(억원)</td><td></td><td></td><td></td></tr> <tr><td>- 종전부동산매각액</td><td></td><td></td><td></td></tr> <tr><td>- 자체보유자금</td><td></td><td></td><td></td></tr> <tr><td>- 국비</td><td></td><td></td><td></td></tr> <tr><td>- 외부차입금</td><td></td><td></td><td></td></tr> <tr><td>종전부동산 (매각금액 포함)</td><td></td><td></td><td></td></tr> <tr><td>- 감정평가액(억원)</td><td></td><td></td><td></td></tr> <tr><td>- 매각부동산(㎡)</td><td></td><td></td><td></td></tr> <tr><td>- 매각금액</td><td></td><td></td><td></td></tr> <tr><td>- 잔류부동산(㎡)</td><td></td><td></td><td></td></tr> <tr><td>직원숙소</td><td></td><td></td><td></td></tr> <tr><td>- 확보방법(신축/세입/전차)</td><td></td><td></td><td></td></tr> <tr><td>- 수용규모(세대수/총면적)</td><td></td><td></td><td></td></tr> <tr><td>임시주택</td><td></td><td></td><td></td></tr> <tr><td>- 확보방법</td><td></td><td></td><td></td></tr> <tr><td>- 수용규모</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지방이전 현황 [기관명/이전지역]				<input type="checkbox"/> 이전현황				구분	기 승인 원용(100.00.00)	현 이전원용	비고	이전지역				이전방법(신축/증자/재입)				이전인원(명)				잔류인원(명)				이전부지(㎡)				이전시설(㎡)				- 업무시설				- 특수시설				- 기타시설				이전비용(억원)				- 공사건축비(유지비 포함)				- 행사임차보증금(관리비 포함)				- 이주지원비				- 이사비(기관, 개인)				- 숙소 건축/세입비				재산조달방법(억원)				- 종전부동산매각액				- 자체보유자금				- 국비				- 외부차입금				종전부동산 (매각금액 포함)				- 감정평가액(억원)				- 매각부동산(㎡)				- 매각금액				- 잔류부동산(㎡)				직원숙소				- 확보방법(신축/세입/전차)				- 수용규모(세대수/총면적)				임시주택				- 확보방법				- 수용규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지방이전계획 변경요청 내역 [기관명]</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7"><input type="checkbox"/> 주요 변경내용</td> </tr>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현 용</th> <th style="width: 10%;">당초(이전) 승인내역 100. 00. 00</th> <th style="width: 10%;">1차변경 승인내역 100. 00. 00</th> <th style="width: 10%;">2차변경</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0%;">공차 변경 요청내역</th> </tr> <tr><td>이전시기</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이전인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이전부지</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이전시설</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 계 :</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업무</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특수</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기타</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이전비용</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합 계 :</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유지세입비</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철사건축</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이전지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재원조달방안</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종전부동산</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7"><input type="checkbox"/> 세부 변경요청 내용 및 사유</td> </tr> <tr> <td colspan="7">○ (이전인원) 당초 → 변경</td> </tr> <tr> <td colspan="7">- 변경사유</td> </tr> <tr> <td colspan="7">○ (이전시설) 당초 → 변경</td> </tr> <tr> <td colspan="7">- 변경사유</td> </tr> <tr> <td colspan="7"><input type="checkbox"/> 첨부 서류</td> </tr> <tr> <td colspan="7">○ 변경요청내용에 대한 증명자료, 기재부·지자체 사전 협의 내용</td> </tr> <tr> <td colspan="7">○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작성 시, 변경사항은 붉은 글씨로 표기</td> </tr> </tbody> </table>	지방이전계획 변경요청 내역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주요 변경내용							구분	현 용	당초(이전) 승인내역 100. 00. 00	1차변경 승인내역 100. 00. 00	2차변경	...	공차 변경 요청내역	이전시기							이전인원							이전부지							이전시설							합 계 :							- 업무							- 특수							- 기타							이전비용							합 계 :							- 유지세입비							- 철사건축							- 이전지원							재원조달방안							종전부동산							<input type="checkbox"/> 세부 변경요청 내용 및 사유							○ (이전인원) 당초 → 변경							- 변경사유							○ (이전시설) 당초 → 변경							- 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첨부 서류							○ 변경요청내용에 대한 증명자료, 기재부·지자체 사전 협의 내용							○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작성 시, 변경사항은 붉은 글씨로 표기						
지방이전 현황 [기관명/이전지역]																																																																																																																																																																																																																																																																																																																															
<input type="checkbox"/> 이전현황																																																																																																																																																																																																																																																																																																																															
구분	기 승인 원용(100.00.00)	현 이전원용	비고																																																																																																																																																																																																																																																																																																																												
이전지역																																																																																																																																																																																																																																																																																																																															
이전방법(신축/증자/재입)																																																																																																																																																																																																																																																																																																																															
이전인원(명)																																																																																																																																																																																																																																																																																																																															
잔류인원(명)																																																																																																																																																																																																																																																																																																																															
이전부지(㎡)																																																																																																																																																																																																																																																																																																																															
이전시설(㎡)																																																																																																																																																																																																																																																																																																																															
- 업무시설																																																																																																																																																																																																																																																																																																																															
- 특수시설																																																																																																																																																																																																																																																																																																																															
- 기타시설																																																																																																																																																																																																																																																																																																																															
이전비용(억원)																																																																																																																																																																																																																																																																																																																															
- 공사건축비(유지비 포함)																																																																																																																																																																																																																																																																																																																															
- 행사임차보증금(관리비 포함)																																																																																																																																																																																																																																																																																																																															
- 이주지원비																																																																																																																																																																																																																																																																																																																															
- 이사비(기관, 개인)																																																																																																																																																																																																																																																																																																																															
- 숙소 건축/세입비																																																																																																																																																																																																																																																																																																																															
재산조달방법(억원)																																																																																																																																																																																																																																																																																																																															
- 종전부동산매각액																																																																																																																																																																																																																																																																																																																															
- 자체보유자금																																																																																																																																																																																																																																																																																																																															
- 국비																																																																																																																																																																																																																																																																																																																															
- 외부차입금																																																																																																																																																																																																																																																																																																																															
종전부동산 (매각금액 포함)																																																																																																																																																																																																																																																																																																																															
- 감정평가액(억원)																																																																																																																																																																																																																																																																																																																															
- 매각부동산(㎡)																																																																																																																																																																																																																																																																																																																															
- 매각금액																																																																																																																																																																																																																																																																																																																															
- 잔류부동산(㎡)																																																																																																																																																																																																																																																																																																																															
직원숙소																																																																																																																																																																																																																																																																																																																															
- 확보방법(신축/세입/전차)																																																																																																																																																																																																																																																																																																																															
- 수용규모(세대수/총면적)																																																																																																																																																																																																																																																																																																																															
임시주택																																																																																																																																																																																																																																																																																																																															
- 확보방법																																																																																																																																																																																																																																																																																																																															
- 수용규모																																																																																																																																																																																																																																																																																																																															
지방이전계획 변경요청 내역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주요 변경내용																																																																																																																																																																																																																																																																																																																															
구분	현 용	당초(이전) 승인내역 100. 00. 00	1차변경 승인내역 100. 00. 00	2차변경	...	공차 변경 요청내역																																																																																																																																																																																																																																																																																																																									
이전시기																																																																																																																																																																																																																																																																																																																															
이전인원																																																																																																																																																																																																																																																																																																																															
이전부지																																																																																																																																																																																																																																																																																																																															
이전시설																																																																																																																																																																																																																																																																																																																															
합 계 :																																																																																																																																																																																																																																																																																																																															
- 업무																																																																																																																																																																																																																																																																																																																															
- 특수																																																																																																																																																																																																																																																																																																																															
- 기타																																																																																																																																																																																																																																																																																																																															
이전비용																																																																																																																																																																																																																																																																																																																															
합 계 :																																																																																																																																																																																																																																																																																																																															
- 유지세입비																																																																																																																																																																																																																																																																																																																															
- 철사건축																																																																																																																																																																																																																																																																																																																															
- 이전지원																																																																																																																																																																																																																																																																																																																															
재원조달방안																																																																																																																																																																																																																																																																																																																															
종전부동산																																																																																																																																																																																																																																																																																																																															
<input type="checkbox"/> 세부 변경요청 내용 및 사유																																																																																																																																																																																																																																																																																																																															
○ (이전인원) 당초 → 변경																																																																																																																																																																																																																																																																																																																															
- 변경사유																																																																																																																																																																																																																																																																																																																															
○ (이전시설) 당초 → 변경																																																																																																																																																																																																																																																																																																																															
- 변경사유																																																																																																																																																																																																																																																																																																																															
<input type="checkbox"/> 첨부 서류																																																																																																																																																																																																																																																																																																																															
○ 변경요청내용에 대한 증명자료, 기재부·지자체 사전 협의 내용																																																																																																																																																																																																																																																																																																																															
○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작성 시, 변경사항은 붉은 글씨로 표기																																																																																																																																																																																																																																																																																																																															

자료: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15.10.14.)

## 4. 소결

### 1) 현행 법령 및 지침상의 문제점

-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법령·지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은 현행 법령상에는 부재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 (법령)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절차 및 항목을 규정
  - (지침)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으로써, 지방 이전 완료 후 지방이전계획 변경 절차 및 항목을 규정
- 법령에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부재한 탓에, 지침 내 사후관리 방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이후에도 이전하기 전에 수립한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법체계에서 직접적으로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항목을 규정한 내용이 부재하여, 그간 「혁신도시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의 절차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항목을 준용해 왔음

### 2) 현행 법령 및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내용

- 현행 법령과 지침에서는 지방이전계획 변경과 구분된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이 부재한 탓에, 여전히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 법령과 지침에서 다루는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내용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범위, ③ 수도권 잔류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범위, ④ 지방이전계획을 미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사항, ⑤ 관리카드 항목 등 기타 사항

- 법령 내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음
  - (①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의 변경절차를 규정
  -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범위)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규정
  - (③ 수도권 잔류 관련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범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
  
- 지침 내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음
  - (①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 지방이전계획 “경미한 변경”과 법령개정, 공식회의 등 공식적으로 결정된 경우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를 명시
  - (③ 수도권 잔류 관련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범위) 수도권 잔류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
  - (④ 지방이전계획을 미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이전 계획 정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이 필요함에도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운영 중인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
    - 시정요청, 현장점검 실시, 감사원 통보, 정원·예산 협의시 불이익 조치 등
  - (⑤ 관리카드 항목 등 기타 사항) 이전완료 공공기관은 매년 말 ①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기 승인 현황 vs. 현 이전현황), ②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최초, n차변경 승인내역, 현재), ③소관 행정기관별 공공기관 수도권잔류 해소 추진현황을 소관부처에 보고하고, 소관부처는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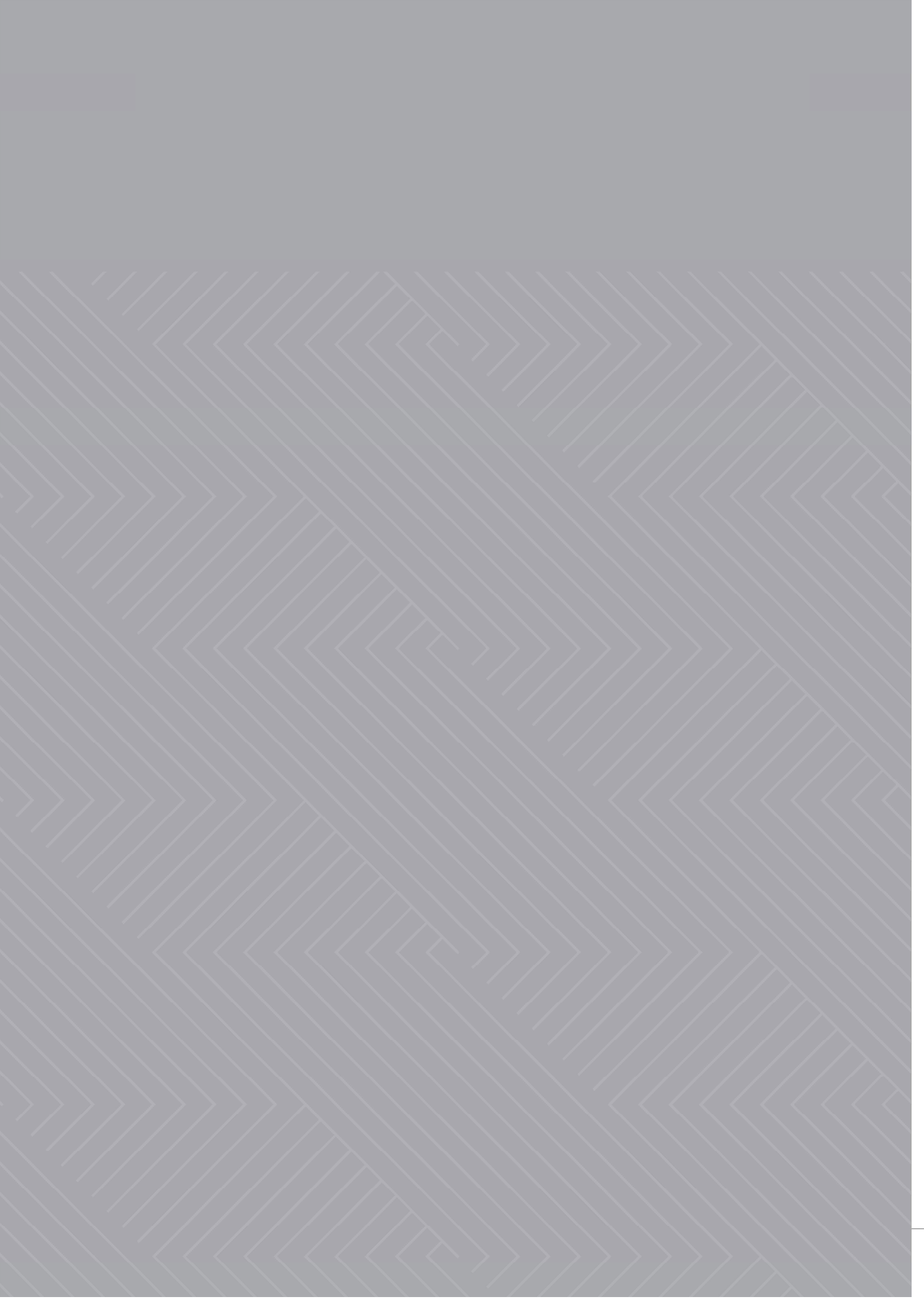


PART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현황 및 사례 분석



1. 지방이전계획 변경 및 사후관리방안 관련 사례분석 방법론 27
2. 지방이전계획의 기존 변경 사례 검토 28
3. 지방이전계획 변경 및 사후관리방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63
4. 법령 및 지침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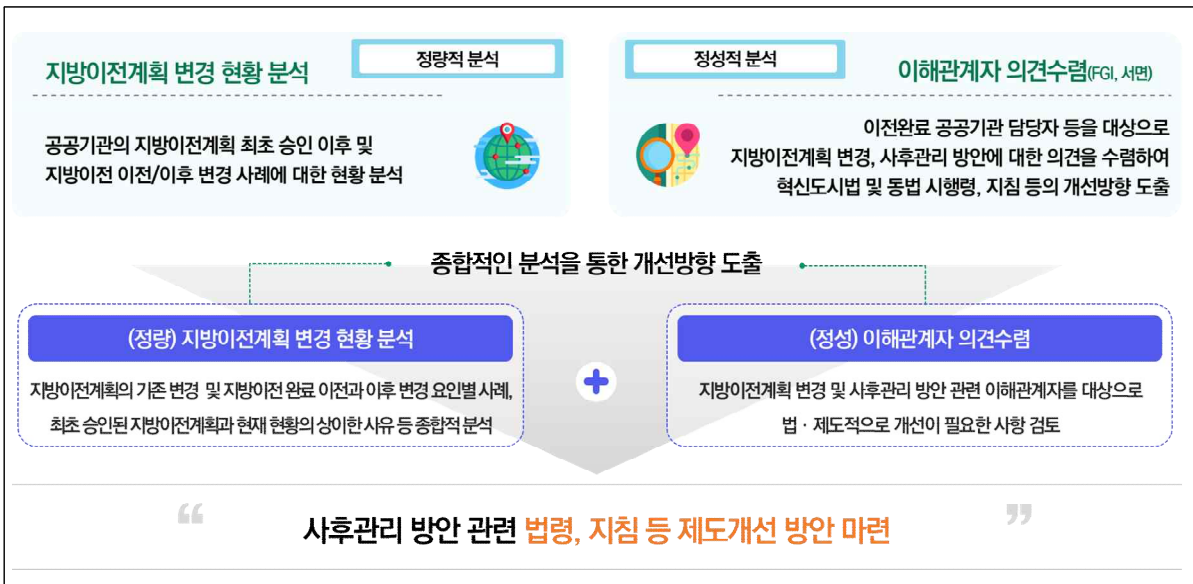


# 1. 지방이전계획 변경 및 사후관리방안 관련 사례분석 방법론

## 1) 사례분석 방법론

- 3장에서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분석을 수행
- 분석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1)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현황을 분석(정량적 분석), 2)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정성적 분석)하고자 함
  - (정량적 분석 : 지방이전계획 변경 현황 분석) 이전완료 공공기관별로 취합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 내 지방이전계획 변경사항을 토대로 지방이전계획 변경 현황을 분석 → 전체 기간, 지방이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
  - (정성적 분석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및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그리고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또는 실무 이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 검토
-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관련 이슈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법령과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그림 III-1 |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사례분석 틀



자료: 연구진 작성

## 2. 지방이전계획의 기존 변경 사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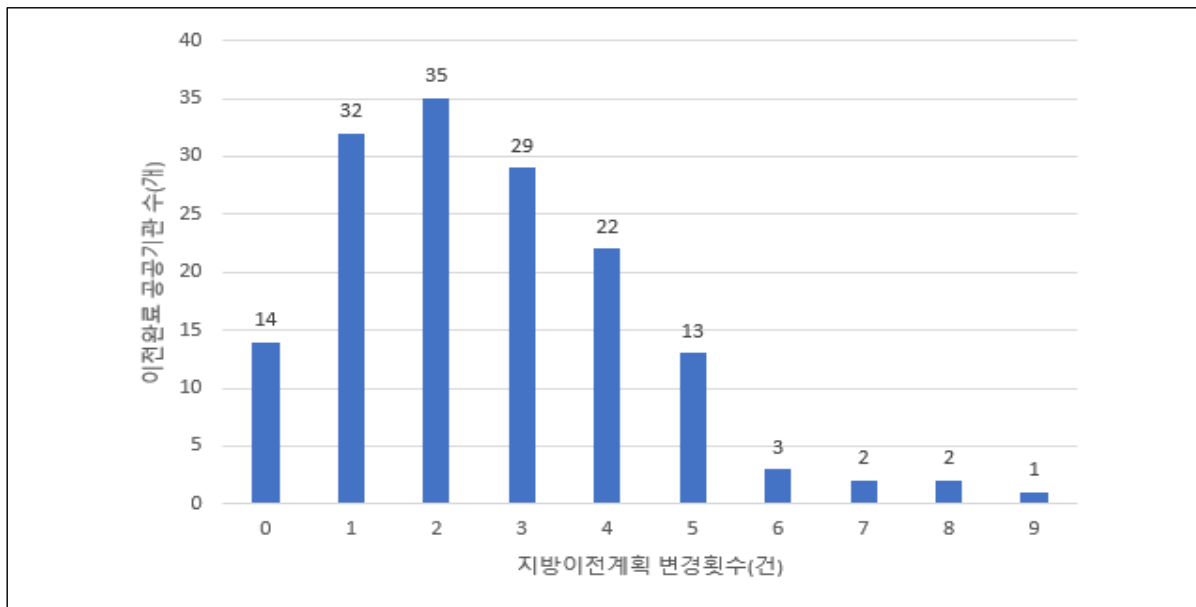
### 1) 분석 개요

- (분석목적) 그간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있어 ‘지방이전계획 변경’ 방식을 취해왔음. 이에 이전완료 공공기관별로 매년 초에 취합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를 토대로 지방이전계획 변경 요인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변경 항목, 내용, 범위 관련 제도개선(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
- (분석자료) 이전완료 공공기관별로 취합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 내 ‘지방이전 세부 현황’ 자료를 활용
  - (지방이전현황 자료 제출 규정)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15.10) ‘에 근거해 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매년 말에 소관부처에 지방이전현황을 보고하고, 소관부처에서는 제출된 자료(2개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를 취합하여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중 ‘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에는 일반현황, 지방이전계획(요약), 지방이전 세부 현황(최초 승인, n차 승인, 현재)과 더불어 ‘최종 승인된 지방이전계획과 현재 현황의 상이 사항 및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
- (분석대상 및 기간) 지방이전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2007년부터 2022년 말까지의 이전완료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변경내역 전수를 분석
  - 분석대상인 이전완료 공공기관은 총 153개이며, 이들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의 실제 변경 승인사례(변경횟수)는 총 399건으로 나타남
  - 이를 관리카드 내 항목별로 구분한 개별 변경내역은 총 2,836건이며, 본 연구에서는 2,836건에 대한 요인별 현황 및 분포를 분석
  - (시기 구분) ① 전체 기간, ② 지방 이전이 이뤄진 시점의 전과 후로 구분하여 현황 분석
- (분석항목) 관리카드 항목을 토대로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과 지침에서 규정한 ‘수도권 잔류와 관련된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변경’의 현황 분석
  - 경미한 변경 관련 항목 : 기관명, 이전시기, 이전비용, 직원숙소, 임시사택, 이전시설
  - 심의가 필요한(중대한) 변경 관련 항목 : 수도권 잔류 관련 인원·업무·조직·시설

## 2)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개괄적 현황

- 2007~2022년 기간 동안 지방이전계획의 최초 승인, 최초 변경 승인, 최종 변경 승인 연도는 기관마다 상이하나, 지방이전계획의 최초 승인은 2007년 4월(관세인재개발원), 최초 1차 변경 승인은 2008년 2월(국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종 변경 승인은 2022년 10월(국민연금공단)에 이뤄짐
- 이전완료 공공기관은 지방이전계획을 평균 2.6회 변경함
  - 2007~2022년 기간 동안 전체 153개 기관 중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기관은 14개(9.2%), 1회 변경한 기관은 32개(20.9%), 2회 변경한 기관은 35개(22.9%), 3회 변경한 기관은 29개(19.0%), 4회 변경한 기관은 22개(14.4%), 5번 변경한 기관은 13개(8.5%), 6번 이상 변경한 기관은 8개(5.2%)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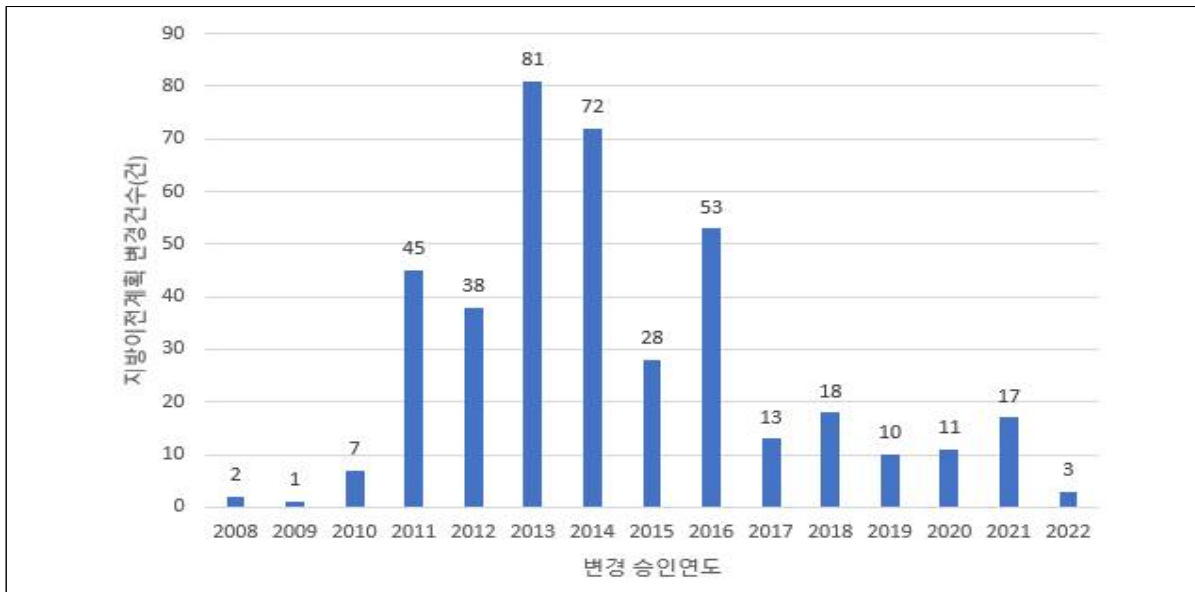
그림 Ⅲ-2 | 지방이전계획 변경횟수



자료: 연구진 작성

- 지방이전계획 변경건수는 2011~2016년 기간에 집중되어 있음. 2013년에 지방이전계획이 가장 많이 변경 승인(81건)되었고, 2022년에는 3건에 불과한 상황

그림 Ⅲ-3 |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연도별 변경건수



자료: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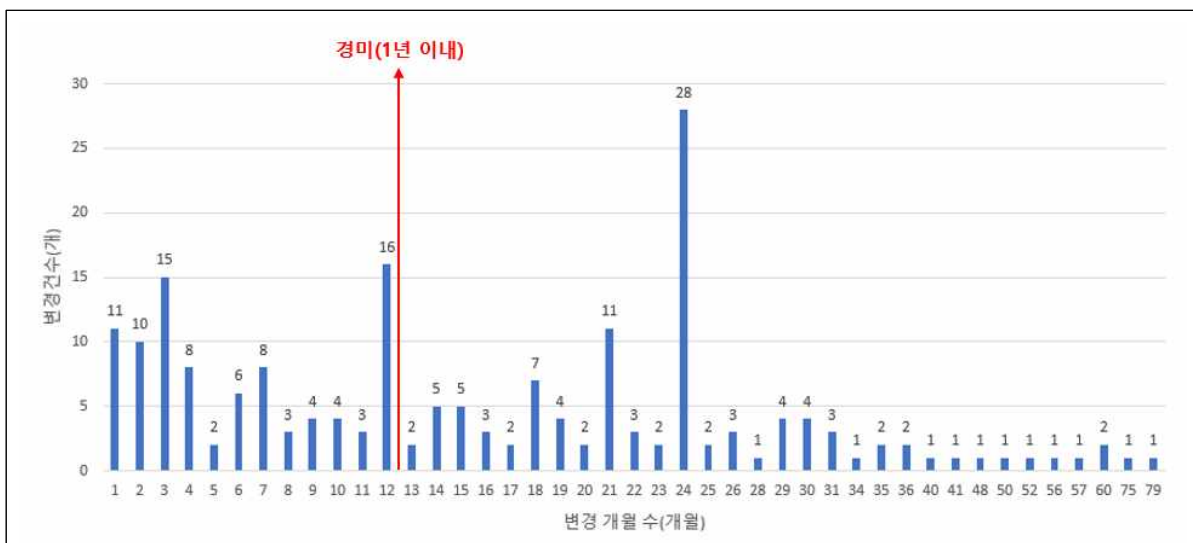
### 3) 변경 요인별 현황 및 분포 : 전체 시기

- (개요) 2007~2022년 기간 동안 153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의 실제 변경 승인사례 399건 (개별 변경사례 2,836건)에 대한 요인별 현황 및 분포를 분석
- (분석항목) 관리카드 항목을 토대로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과 지침에서 규정한 수도권 잔류 관련 “균형위 심의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을 구분하여 검토
  - 경미한 변경 관련 항목 : 이전시기, 이전비용, 직원숙소, 임시사택, 이전시설
  - 중대한 변경 관련 항목 : 수도권 잔류 관련 인원·업무·조직·시설
  - 세부 변경내역 2,836건에는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 항목이 모두 포함됨

#### (1) 경미한 변경

- (이전시기) 이전시기를 변경한 사례는 전체 2,836건 중 197건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한 경우(경미한 변경)는 90건(46%)이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한 경우는 107건(54%)임
  - 2년(24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한 사례(164건, 83.2%)가 다수 확인

그림 III-4 | 지방이전계획 이전시기 변경 현황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전비용) 이전비용(총계) 변경한 사례는 전체 2,836건 중 230건임
  - 이전비용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총 9건(3.9%), 이전비용이 증가한 사례는 121건(52.6%), 이전비용이 감소한 사례는 100건(43.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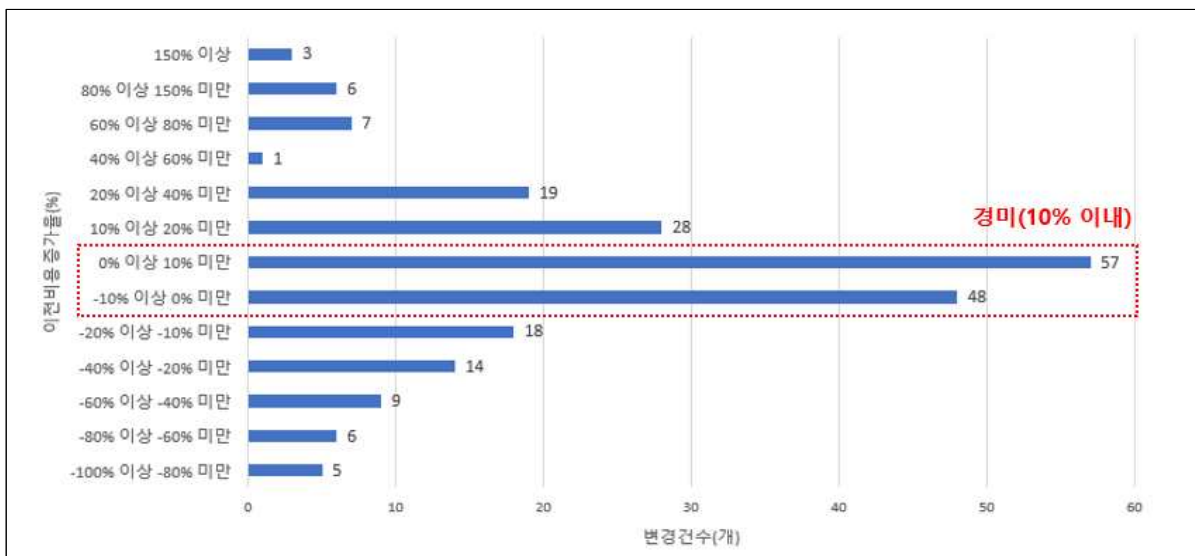
표 Ⅲ-1 | 이전비용 변경 현황

구분	신규 책정	증가	감소	합계
사례(건)	9	121	100	230(105)
비율(%)	3.9	52.6	43.5	100(45.7)

주 : 합계 옆 괄호 안의 값은 10% 범위 이내의 경미한 변경 건수를 의미

- 이전비용 산정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한 경우(경미한 변경)는 105건(45.7%)이며, 10%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는 125건(54.3%)으로 경미한 변경 사례가 절반 가까이 차지
- ※ 이전비용이 신규 책정된 사례 9건에 대한 비율은 고려하지 않음
- 0% 이상 10% 미만에서 변경한 사례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 이상 0% 미만에서 변경한 사례가 48건으로 뒤를 이음

그림 Ⅲ-5 | 이전비용 변경 비율별 분포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전비용 세부항목)** 이전비용에는 청사건축비(부지비 포함), 청사임차보증금(관리비 포함), 이주지원비, 이사비(기관, 개인), 숙소 건축 및 매입비 등의 비용이 포함
  - (청사건축비(부지비 포함)) 청사건축비를 변경한 사례는 총 181건이며, 이중 청사건축비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18건, 청사건축비가 증가한 사례는 93건, 감소한 사례는 70건임
    - \* 청사건축비가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85건(0% 이상 10% 미만은 47건, -10% 이상 0% 미만은 38건)
  - (청사임차보증금(관리비 포함)) 청사임차보증금을 변경한 사례는 총 36건이며, 이중 청사임차보증금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8건, 청사임차보증금이 증가한 사례는 7건, 청사임차보증금이 감소한 사례는 21건임
    - \* 청사임차보증금이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2건(0% 이상 10% 미만, -10% 이상 0% 미만 각각 1건)
  - (이주지원비) 이주지원비를 변경한 사례는 총 124건이며, 이중 이주지원비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24건, 이주지원비가 증가한 사례는 19건, 이주지원비가 감소한 사례는 81건임
    - \* 이주지원비가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7건(0% 이상 10% 미만은 5건, -10% 이상 0% 미만은 2건)
  - (이사비(기관, 개인)) 이사비를 변경한 사례는 총 108건이며, 이중 이사비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37건, 이사비가 증가한 사례는 38건, 이사비가 감소한 사례는 33건임
    - \* 이사비가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9건(0% 이상 10% 미만은 6건, -10% 이상 0% 미만은 3건)
  - (숙소 건축 및 매입비) 숙소 건축 및 매입비를 변경한 사례는 총 58건이며, 이중 숙소 건축 및 매입비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27건, 숙소 건축 및 매입비가 증가한 사례는 13건, 숙소 건축 및 매입비가 감소한 사례는 18건임
    - \* 숙소 건축 및 매입비가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4건(0% 이상 10% 미만은 1건, -10% 이상 0% 미만은 3건)

표 Ⅲ-2 | 이전비용 세부항목 변경 현황

(단위 : 건)

구분	신규 책정	증가	감소	합계
청사건축비	18	93	70	181(85)
청사임차보증금	8	7	21	36(2)
이주지원비	25	19	80	124(7)
이사비	37	38	33	108(9)
숙소 건축 및 매입비	27	13	18	58(4)

주 : 합계 옆 괄호 안의 값은 10% 범위 이내의 경미한 변경 건수를 의미

- (직원숙소·임시사택)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제시된 3가지 기준 중에서 관리카드 항목을 통해 검토가 가능한 ② 항목과 ③ 항목 중 임시사택 관련 항목에 대해 현황 분석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 >

① 신축·매입·임차예산을 확보하여 변경승인 요청, ② 변경규모가 이전인원의 10% 이내인 경우, ③ 균형위에 보고된 직원숙소·임시사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직원숙소 : 現 수도권 숙소 또는 순환근무자 수 중 큰 숫자(→ 직원 수용규모 합계가 지방이전하기 전에 운영하던 숙소 규모와 최근 3년간 평균 순환근무자 수 중 큰 값 이내<sup>3)</sup>)) / 임시사택 : 이전인원의 40% 이내)

- (규정 ②) (직원숙소 규모) 직원숙소 인원이 변경된 사례는 전체 2,836건 중 60건이며, 직원숙소 규모가 이전인원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경미한 변경)는 17건임
- 직원숙소 인원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36건, 직원숙소 인원이 증가한 사례는 3건, 직원숙소 인원이 감소한 사례는 20건임. 그중 직원숙소 규모가 0으로 변경된 사례는 1건임

3) 국토교통부(2021.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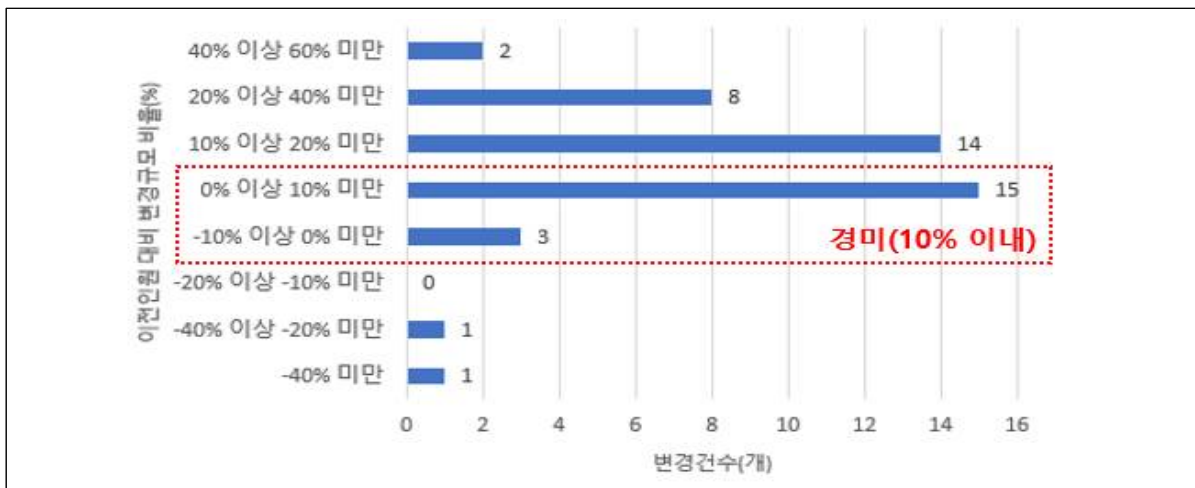
그림 Ⅲ-6 | 이전인원 대비 직원숙소 규모 변경비율 분포



자료: 연구진 작성

- (규정 ②) (임시사택 규모) 임시사택 인원이 변경된 사례는 총 44건이며, 임시사택 규모가 이전인원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경미한 변경)는 18건임
- 임시사택 인원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31건, 임시사택 인원이 증가한 사례는 9건, 임시사택 인원이 감소한 사례는 5건이며, 이중 그중 임시사택 규모가 0으로 변경된 사례는 1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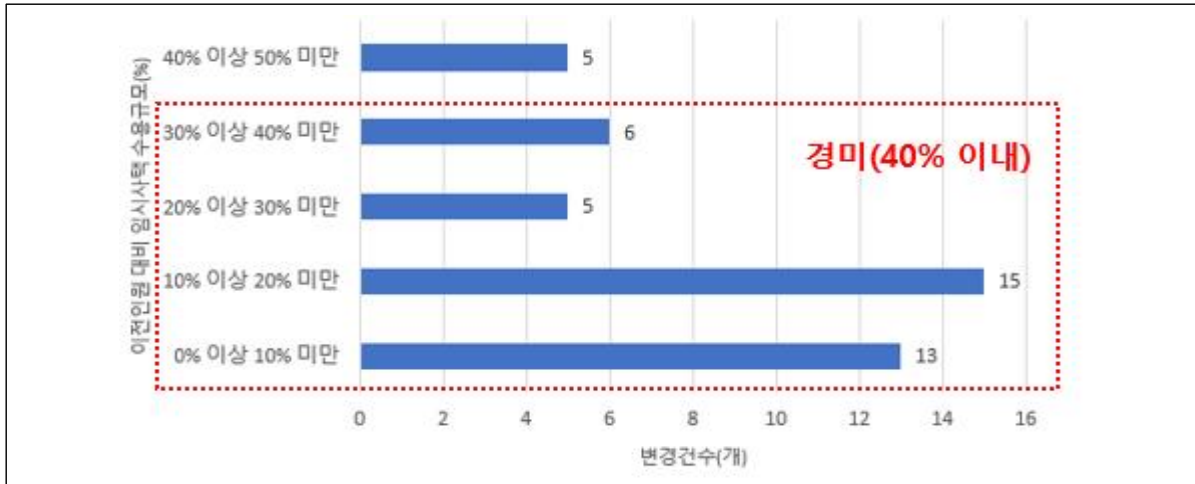
그림 Ⅲ-7 | 이전인원 대비 임시사택 규모 변경비율 분포



자료: 연구진 작성

- (규정 ③) 임시사택 인원이 변경된 사례 44건 중 임시사택의 수용 규모가 이전인원의 40% 이내(경미한 변경)인 사례는 39건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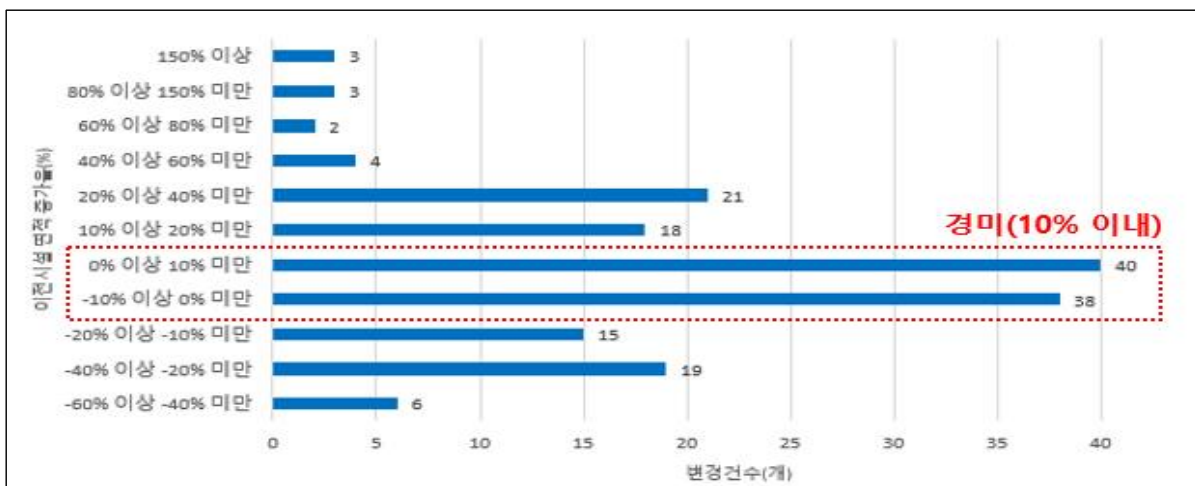
그림 III-8 | 이전인원 대비 임시사택 규모 비율 분포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전시설) 이전시설(총계) 규모를 변경한 사례는 총 175건임
  - 이전시설 규모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총 6건(3.4%), 이전시설 규모가 증가한 사례는 91건(52.0%), 이전시설 규모가 감소한 사례는 78건(44.6%)임
  - 이전시설 규모를 10% 범위 안에서 변경한 경우(경미한 변경)는 78건(46.1%)이며, 10%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는 91건(53.9%)임
  - ※ 이전시설 규모가 신규 책정된 사례 6건에 대한 비율은 고려하지 않음
  - 0% 이상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한 사례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 이상 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한 사례가 38건으로 뒤를 이음

그림 III-9 | 이전시설 규모 변경 비율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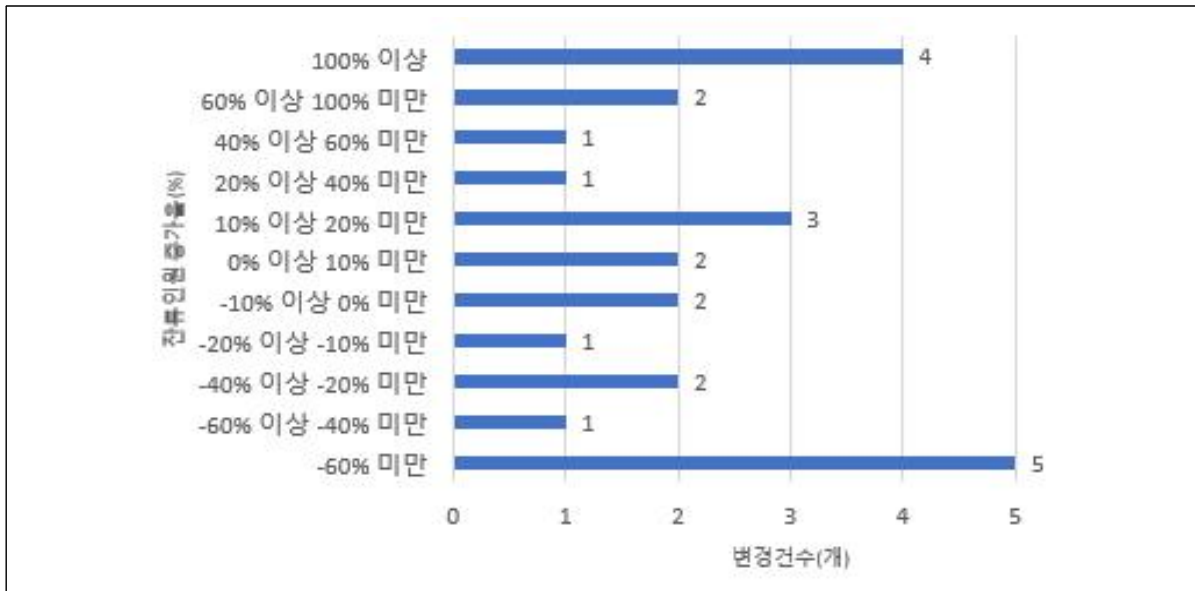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전시설 세부항목) 이전시설에는 업무시설, 특수시설, 기타시설 등의 항목이 포함
  - (업무시설) 업무시설 면적을 변경한 사례는 총 161건이며, 이중 업무시설 면적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10건, 업무시설 면적이 증가한 사례는 73건, 감소한 사례는 78건임
    - \* 업무시설 면적이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69건(0% 이상 10% 미만은 28건, -10% 이상 0% 미만은 41건)
  - (특수시설) 특수시설 면적을 변경한 사례는 총 107건이며, 이중 특수시설 면적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15건, 특수시설 면적이 증가한 사례는 43건, 감소한 사례는 49건임
    - \* 특수시설 면적이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26건(0% 이상 10% 미만은 15건, -10% 이상 0% 미만은 11건)
  - (기타시설) 기타시설 면적을 변경한 사례는 총 55건이며, 이중 기타시설 면적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12건, 기타시설 면적이 증가한 사례는 26건, 감소한 사례는 17건임
    - \* 기타시설 면적이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7건(0% 이상 10% 미만은 6건, -10% 이상 0% 미만은 1건)

(2) 중대한 변경

- 지침에서 규정한 중대한 변경 사항은 수도권 잔류 관련 “인원”, “조직”, “시설”이며, 그중 관리카드를 통해 검토가 가능한 항목은 “수도권 잔류인원”, “수도권 잔류업무”, “수도권 잔류시설”임
- (수도권 잔류인원) 잔류인원을 변경한 사례는 총 34건으로, 전체 변경 사례(2,836건) 중 1.2%에 불과
  - 잔류인원이 신규 책정된 사례(수도권에 신규 인원잔류)는 총 10건(29.4%), 잔류인원이 증가한 사례(기존 잔류인원의 증가)는 13건(38.2%), 잔류인원이 감소한 사례\*는 11건(32.4%)임
  - \* 변경 이후 잔류인원이 0 값인 사례는 5건임
  - 잔류인원이 10% 범위 안에서 변경한 경우는 4건(11.8%)이며, 10%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는 30건(98.2%)임

그림 Ⅲ-10 | 잔류인원 변경 비율별 분포



자료: 연구진 작성

○ (수도권 잔류업무 변경) 잔류업무를 변경한 사례는 총 24건으로, 전체 변경 사례(2,836건) 중 0.8%에 불과

- 관리카드에 제시된 잔류업무 변경 사유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전력공사(2018.1, 2021.7 승인) UAE 원전 건설, 사우디 원전, 해외사업, 빅데이터 법률 대응 등
- 국민연금공단(2014.2 승인) 기금 운용
- 국립공원공단(2019.6 승인) 항공대 운영
- 국토안전관리원(2018.1, 2021.5 승인) 중부권 안전진단, 하자심사분쟁조정, 시설물정보관리, 디지털혁신추진단
- 관세인재개발원(2011.7 승인) 탐지견 번식 및 훈련
- 국방기술품질원(2014.5 승인) 수도권 업체 품질보증 및 기술평가,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지도
- 국립식량과학원(2014.11 승인) 작물육종유전자원보존 등

- (잔류업무 주요 내용) 잔류업무 내용을 기입한 기관은 39개이며, 총 101건의 사례를 기입했으며, 잔류업무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소재 기관과의 연계·협력”, “수도권 관련 업무 수행”, “수도권 소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IT 및 금융 관련 업무 수행”, “국제협력사업 수행”, “교육” 등으로 요약

- (수도권 소재 기관과의 연계·협력) 대학 등의 전문가 초청 및 국회 현안 대응 등
- (수도권 관련 업무 수행) 수도권 지역 밀착업무(채권인수, 기업지원, 국유부동산 관리 업무 등, 수도권 피해구제·분쟁조정, 서울 지역 감정 업무, 수도권 고객지원, 수도권·중부권역 재난 원인조사 관련 업무, 수도권 한정 업무(현장밀착형 대면업무) 등
- (수도권 소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회관관리, 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연합기숙사) 시공 관리 및 운영, 누리꿈스퀘어 운영, KF글로벌센터,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업무, 특수시설 운영 등
- (IT, 금융 관련 업무 수행) 자금운용·리스크관리·재해보상·법무·정보시스템관리, IT 업무 수행, 대면 금융시장지원 비즈니스 업무 수행, 자금운용, 학자금재원 조달을 위한 재단체 발행 등 금융업무 수행,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업무, 지식정보보안산업지원(센터) 업무, 기부금 조성 및 인재육성사업(멘토링) 등 수행
- (국제협력사업 수행) 방송통신관련 국제협력사업 수행, 대외협력 및 방문동포 지원, 아태재정협력사업 등 국제업무 담당 등
- (교육 등) 영화인 재교육 업무, 로스쿨출신 검사 교육, 야간석사과정 등

○ (수도권 잔류시설 변경) 잔류시설을 변경한 사례는 총 17건으로, 전체 변경 사례(2,836건) 중 0.6%에 불과

- 관리카드에 제시된 잔류시설 변경 사유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전력공사(2021.7 승인) 아트센터
- 국민연금공단(2014.2 승인) 강남사옥 일부 사용
- 국립공원공단(2019.6 승인) 김포공항 입차
- 국토안전관리원(2018.1 승인) 입차청사
- 관세인재개발원(2011.7 승인) 탐지견 견사 및 훈련동
- 국방기술품질원(2014.5 승인) 기존 청사활용(국방연구원 내 사무실)
- 국립식량과학원(2014.11 승인) 청사 활용

- (잔류시설 주요 내용) 수도권 잔류시설 내용을 기입한 기관은 33개이며, 총 86건의 사례를 기입했으며, 잔류시설 주요 내용은 “수도권 소재 청사·사옥 또는 지사·사무소”, “센터”, “교육원, 훈련동”, “극장, 미술관, 전시관 등”, “기숙사” 등으로 요약

- (수도권 소재 청사·사옥 또는 지사 사무소) 강남사옥 일부사용, 김포공항 입차, 서울상록회관(소유), 서울세관(소유), 기존 청사활용(국방연구원 내 사무실), 서울사옥, 서울사무소(입차), 역삼사옥, 역삼분원(토지와 건물 소유) 등
- (센터) 아트센터, 영화교육지원센터, DMS제작센터, aT센터, 일산센터 등
- (교육원, 훈련동) 탐지견 견사 및 훈련동, 유통교육원 등
- (극장, 미술관, 전시관 등)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등 극장·미술관, 누리꿈스퀘어 등
- (기숙사) 서울센터(창업지원형 기숙사) 등
- (기타) 화훼공판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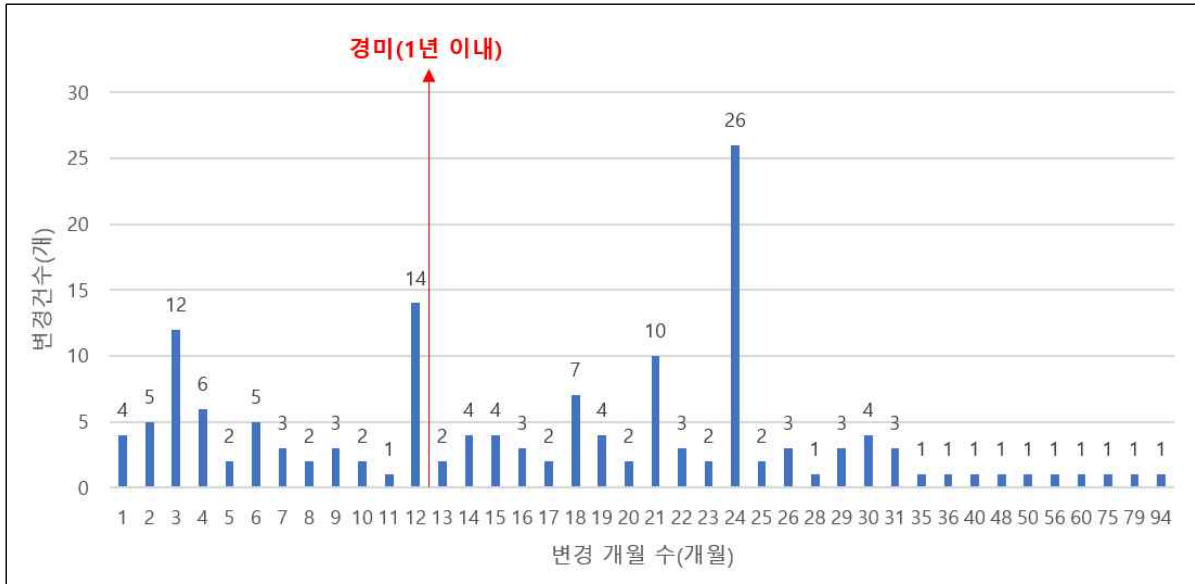
#### 4) 변경 요인별 현황 및 분포 : 지방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구분

- (개요) 2007~2022년 기간 동안 153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의 실제 변경 승인사례 399건, 개별 변경사례 2,836건에 대한 요인별 현황 및 분포를 지방이전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변경사항으로 구분하여 분석
  - 전체 2,836건 중 지방이전 시점 전에 변경된 사례는 총 1,671건(59%), 지방이전 시점 후에 변경된 사례는 1,165건(41%)으로 지방이전 전에 변경된 사례가 다수
- (분석항목) 관리카드 항목을 토대로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과 지침에서 규정한 수도권 잔류 관련 “균형위 심의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을 구분하여 검토
  - 경미한 변경 관련 항목 : 이전시기, 이전비용, 직원숙소, 임시사택, 이전시설
  - 중대한 변경 관련 항목 : 수도권 잔류 관련 인원·업무·조직·시설
  - 세부 변경내역 2,836건에는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 항목이 모두 포함됨

##### (1) 경미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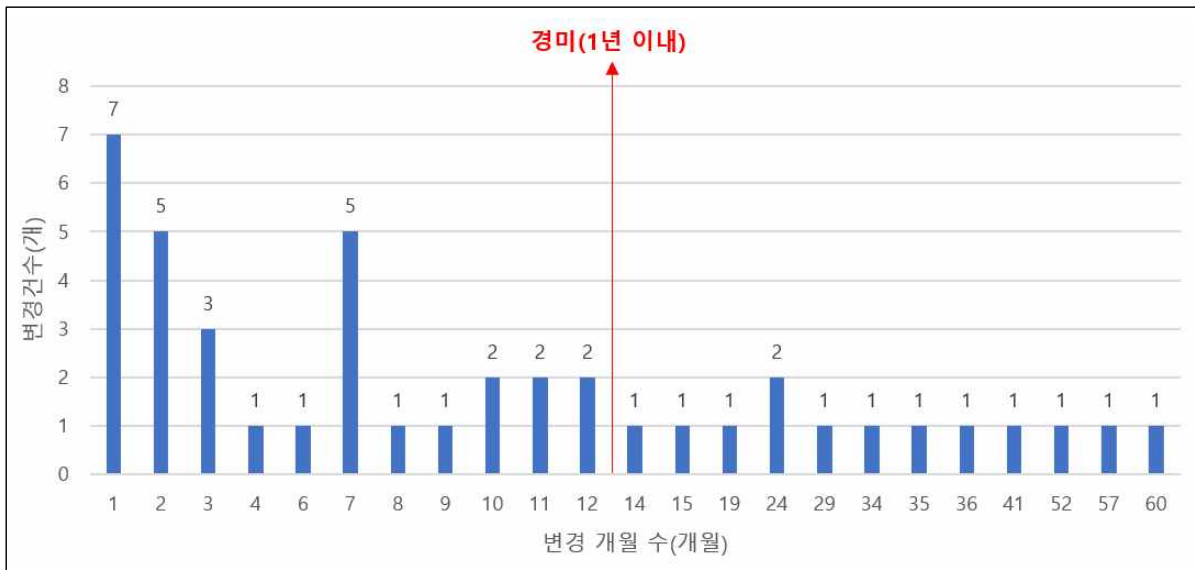
- (이전시기-이전) 이전시기 이전에 이전시기를 변경된 사례는 전체 1,671건 중 154건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한 경우(경미한 변경)는 59건(38%)이며, 1년 초과 범위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한 경우는 95건(62%)임
  - 2년(24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한 사례(128건, 83.1%)가 다수 확인
- (이전시기-이후) 이전시기 이후에 이전시기를 변경한 사례는 전체 1,165건 중 43건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한 경우(경미한 변경)는 30건(70%)이며, 1년 초과 범위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한 경우는 13건(30%)임
  - 2년(24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한 사례(35건, 81.4%)가 다수 확인

그림 Ⅲ-11 | 지방이전계획 이전시기 변경 현황(이전시기 이전 변경)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Ⅲ-12 | 지방이전계획 이전시기 변경 현황(이전시기 이후 변경)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전비용~~—이전) 이전시기 이전에 이전비용(총계)을 변경한 사례는 전체 1,671건 중 146건임
  - 이전비용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총 9건(6.2%), 이전비용이 증가한 사례는 75건(51.4%), 이전비용이 감소한 사례는 62건(43.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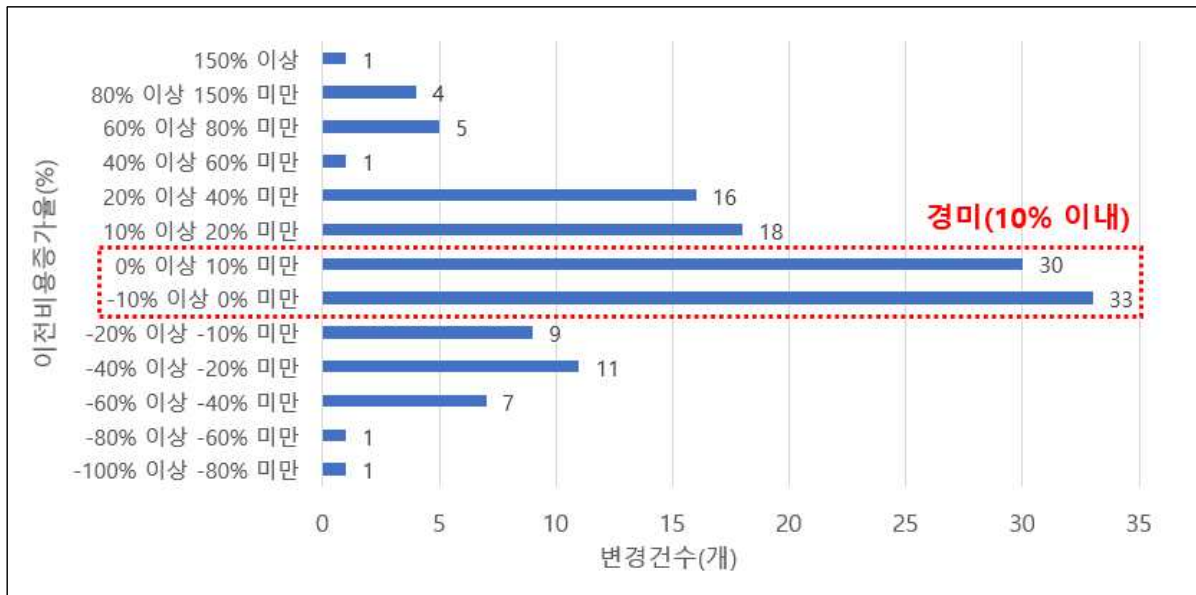
표 Ⅲ-3 | 이전비용 변경 현황(이전시기 이전 변경)

구분	신규 책정	증가	감소	합계
사례(건)	9	75	62	146(63)
비율(%)	6.2	51.4	42.5	100(43.2)

주 : 합계 옆 괄호 안의 값은 10% 범위 이내의 경미한 변경 건수를 의미

- 이전비용 산정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한 경우(경미한 변경)는 63건(46.0%)이며, 10%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는 74건(54.0%)으로 확인
  - ※ 이전비용이 신규 책정된 사례 9건에 대한 비율은 고려하지 않음
- ‘-10% 이상 0% 미만’에서 변경한 사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0% 이상 10% 미만’에서 변경한 사례가 30건으로 뒤를 이음

그림 Ⅲ-13 | 이전비용 변경 비율별 분포(이전시기 이전 변경)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전비용—이후) 이전시기 이후에 이전비용(총계)을 변경한 사례는 전체 1,165건 중 84건임
  - 이전비용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없으며, 이전비용이 증가한 사례는 46건(54.8%), 이  
전비용이 감소한 사례는 38건(45.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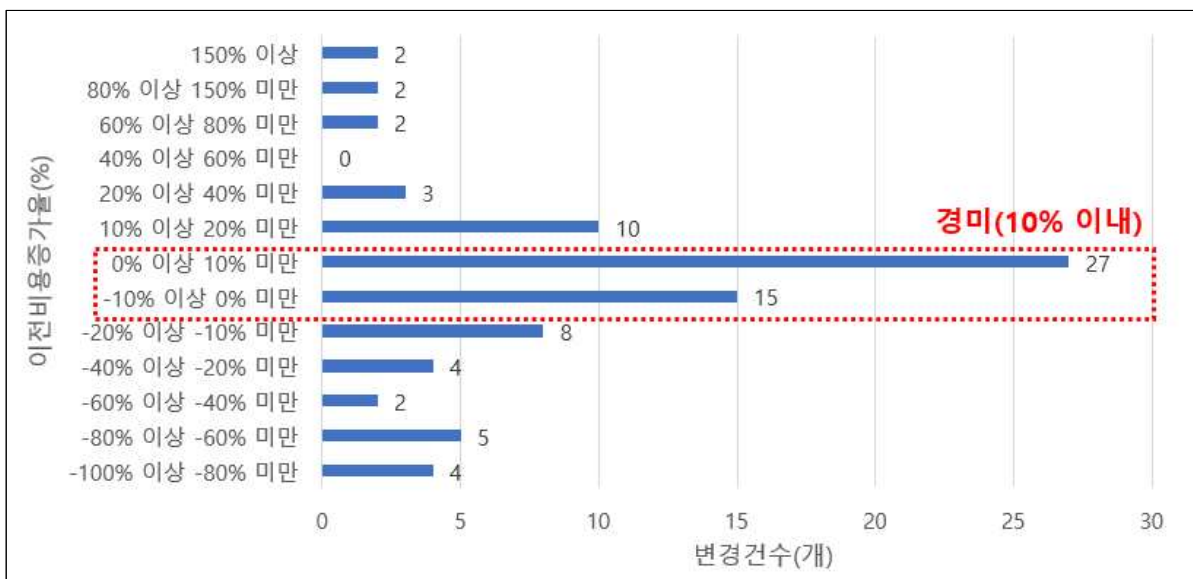
표 Ⅲ-4 | 이전비용 변경 현황(이전시기 이후 변경)

구분	신규 책정	증가	감소	합계
사례(건)	0	46	38	84(42)
비율(%)	0	54.8	45.2	100(50.0)

주 : 합계 옆 괄호 안의 값은 10% 범위 이내의 경미한 변경 건수를 의미

- 이전비용 산정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한 경우(경미한 변경)는 42건(50.0%)이며,  
10%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는 42건(50.0%)으로 확인
- ‘0% 이상 10% 미만’에서 변경한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 이상  
0% 미만’에서 변경한 사례가 15건으로 뒤를 이음

그림 Ⅲ-14 | 이전비용 변경 비율별 분포(이전시기 이후 변경)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전비용 세부항목-이전)

- (청사건축비(부지비 포함)) 이전시기 이전에 청사건축비를 변경한 사례는 총 120건이며, 이중 청사건축비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14건, 청사건축비가 증가한 사례는 61건, 감소한 사례는 45건임
  - \* 청사건축비가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50건(0% 이상 10% 미만은 29건, -10% 이상 0% 미만은 21건)
- (청사임차보증금(관리비 포함)) 이전시기 이전에 청사임차보증금을 변경한 사례는 총 15건이며, 이중 청사임차보증금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3건, 청사임차보증금이 증가한 사례는 4건, 감소한 사례는 8건임
  - \* 청사임차보증금이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1건(0% 이상 10% 미만 1건)
- (이주지원비) 이전시기 이전에 이주지원비를 변경한 사례는 총 71건이며, 이중 이주지원비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16건, 이주지원비가 증가한 사례는 11건, 감소한 사례는 44건임
  - \* 이주지원비가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6건(0% 이상 10% 미만은 4건, -10% 이상 0% 미만은 2건)
- (이사비(기관, 개인)) 이전시기 이전에 이사비를 변경한 사례는 총 61건이며, 이중 이사비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37건, 이사비가 증가한 사례는 6건, 감소한 사례는 18건임
  - \* 이사비가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6건(0% 이상 10% 미만은 4건, -10% 이상 0% 미만은 2건)
- (숙소 건축 및 매입비) 이전시기 이전에 숙소 건축 및 매입비를 변경한 사례는 총 30건이며, 이중 숙소 건축 및 매입비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15건, 숙소 건축 및 매입비가 증가한 사례는 5건, 감소한 사례는 10건임
  - \* 숙소 건축 및 매입비가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1건(-10% 이상 0% 미만은 1건)

표 III-5 | 이전비용 세부항목 변경 현황(이전시기 이전 변경)

(단위 : 건)

구분	신규 책정	증가	감소	합계
청사건축비	14	61	45	120(50)
청사임차보증금	3	4	8	15(1)
이주지원비	16	11	44	71(6)
이사비	37	6	18	61(6)
숙소 건축 및 매입비	15	5	10	30(1)

주 : 합계 옆 괄호 안의 값은 10% 범위 이내의 경미한 변경 건수를 의미

○ (이전비용 세부항목-이후)

- (청사건축비(부지비 포함)) 이전시기 이후에 청사건축비를 변경한 사례는 총 61건이며, 이중 청사건축비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4건, 청사건축비가 증가한 사례는 32건, 감소한 사례는 25건임
  - \* 청사건축비가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35건(0% 이상 10% 미만은 18건, -10% 이상 0% 미만은 17건)
- (청사임차보증금(관리비 포함)) 이전시기 이후에 청사임차보증금을 변경한 사례는 총 21건이며, 이중 청사임차보증금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5건, 청사임차보증금이 증가한 사례는 3건, 감소한 사례는 13건임
  - \* 청사임차보증금이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1건(-10% 이상 0% 미만 1건)
- (이주지원비) 이전시기 이후에 이주지원비를 변경한 사례는 총 53건이며, 이중 이주지원비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8건, 이주지원비가 증가한 사례는 8건, 감소한 사례는 37건임
  - \* 이주지원비가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1건(0% 이상 10% 미만 1건)
- (이사비(기관, 개인)) 이전시기 이후에 이사비를 변경한 사례는 총 49건이며, 이중 이사비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17건, 이사비가 증가한 사례는 17건, 감소한 사례는 15건임
  - \* 이사비가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3건(0% 이상 10% 미만은 2건, -10% 이상 0% 미만은 1건)
- (숙소 건축 및 매입비) 이전시기 이후에 숙소 건축 및 매입비를 변경한 사례는 총 28건이며, 이중 숙소 건축 및 매입비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13건, 숙소 건축 및 매입비가 증가한 사례는 8건, 감소한 사례는 7건임
  - \* 숙소 건축 및 매입비가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3건(0% 이상 10% 미만은 1건, -10% 이상 0% 미만은 2건)

표 Ⅲ-6 | 이전비용 세부항목 변경 현황(이전시기 이후 변경)

(단위 : 건)

구분	신규 책정	증가	감소	합계
청사건축비	4	32	25	61(35)
청사임차보증금	5	3	13	21(1)
이주지원비	8	8	37	53(1)
이사비	17	17	15	49(3)
숙소 건축 및 매입비	13	8	7	28(3)

주 : 합계 옆 괄호 안의 값은 10% 범위 이내의 경미한 변경 건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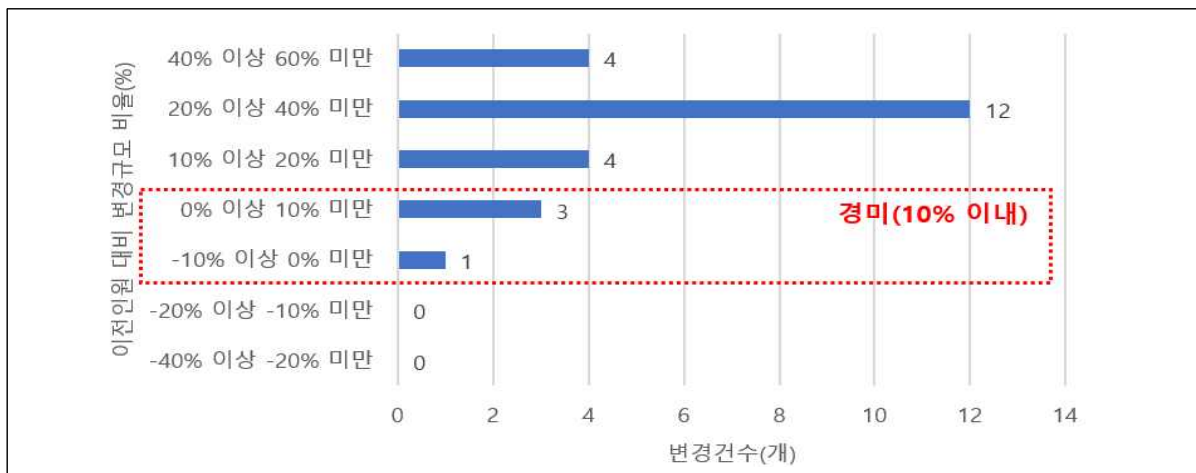
- (직원숙소·임시사택)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아래의 기준 중에서 관리카드 항목을 통해 검토가 가능한 ② 항목과 ③ 항목(임시사택 : 이전인원의 40% 이내)에 대해 현황 분석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 >

① 신축·매입·임차예산을 확보하여 변경승인 요청, ② 변경규모가 이전인원의 10% 이내인 경우, ③ 균형위에 보고된 직원숙소·임시사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직원숙소 : 現 수도권 숙소 또는 순환근무자 수 중 큰 숫자(→ 직원 수용규모 합계가 지방이전하기 전에 운영하던 숙소 규모와 최근 3년간 평균 순환근무자 수 중 큰 값 이내<sup>4)</sup>) / 임시사택 : 이전인원의 40% 이내)

- (규정 ②) (직원숙소 규모-이전) 이전시기 이전에 직원숙소 인원이 변경된 사례는 전체 1,671건 중 24건임
- 이전인원 수와 상관없이 직원숙소 인원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22건, 직원숙소 인원이 증가한 사례는 1건, 직원숙소 인원이 감소한 사례는 1건임
- 직원숙소 규모가 이전인원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경미한 변경)는 4건임

그림 Ⅲ-15 | 이전인원 대비 직원숙소 규모 변경비율 분포(이전시기 이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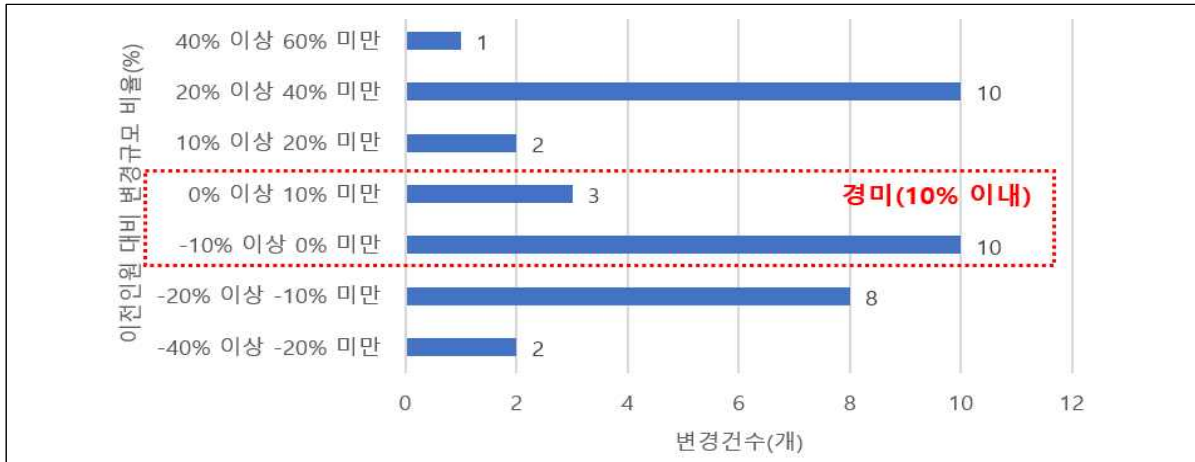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 (규정 ②) (직원숙소 규모-이후) 이전시기 이후에 직원숙소 인원이 변경된 사례는 전체 1,165건 중 36건임
- 이전인원 수와 상관없이 직원숙소 인원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14건이며, 직원숙소 인원이 증가한 사례는 2건, 직원숙소 인원이 감소한 사례는 20건임

4) 국토교통부(2021.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 기준

- 직원숙소 규모가 이전인원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경미한 변경)는 13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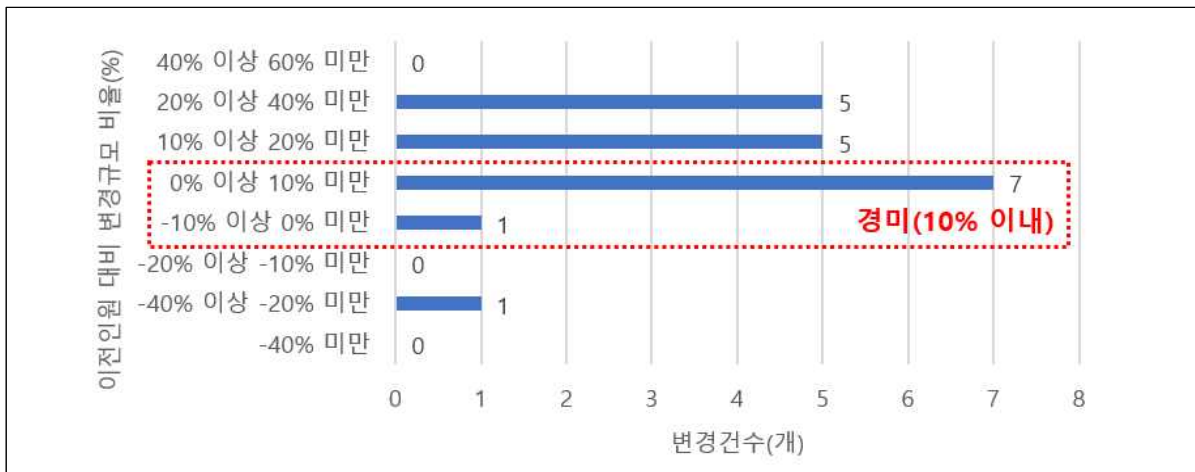
그림 Ⅲ-16 | 이전인원 대비 직원숙소 규모 변경비율 분포(이전시기 이후 변경)



자료: 연구진 작성

- (규정 ②) (임시사택 규모-이전) 이전시기 이전에 임시사택 인원이 변경된 사례는 전체 1,671건 중 19건임
- 이전인원 수와 상관없이 임시사택 인원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14건, 임시사택 인원이 증가한 사례는 3건, 임시사택 인원이 감소한 사례는 2건임
- 임시사택 규모가 이전인원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경미한 변경)는 8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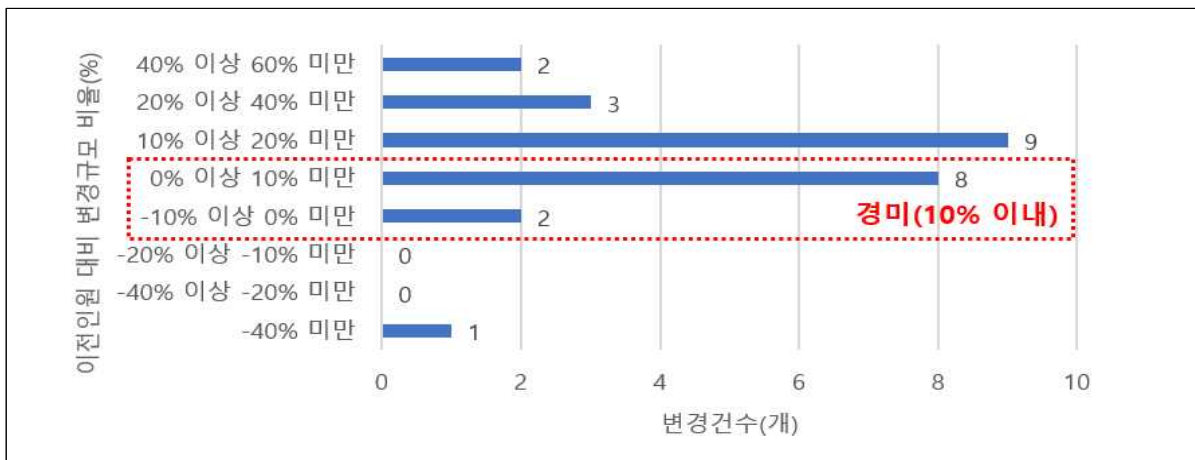
그림 Ⅲ-17 | 이전인원 대비 임시사택 규모 변경비율 분포(이전시기 이전 변경)



자료: 연구진 작성

- (규정 ②) (임시사택 규모-이후) 이전시기 이후에 임시사택 인원이 변경된 사례는 전체 1,671건 중 25건임
- 이전인원 수와 상관없이 임시사택 인원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16건, 임시사택 인원이 증가한 사례는 6건, 감소한 사례는 3건임
- 임시사택 규모가 이전인원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경미한 변경)는 10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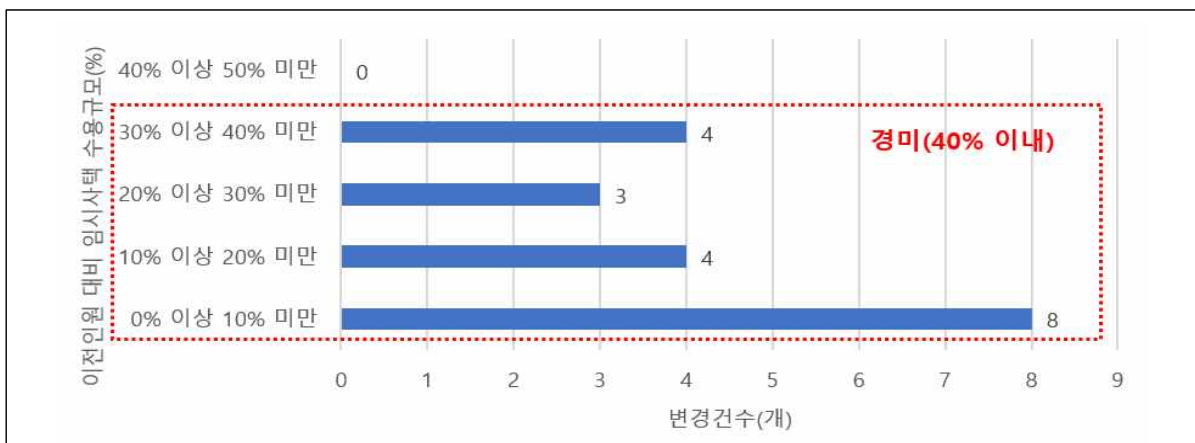
그림 Ⅲ-18 | 이전인원 대비 임시사택 규모 변경비율 분포(이전시기 이후 변경)



자료: 연구진 작성

- (규정 ③) (임시사택 수용 규모가 이전인원 40% 이내-이전) 이전시기 이전에 임시사택 인원이 변경된 사례 19건 모두 임시사택의 수용 규모가 이전인원의 40% 이내(경미한 변경)인 사례로 확인

그림 Ⅲ-19 | 이전인원 대비 임시사택 규모 비율 분포(이전시기 이전 변경)



자료: 연구진 작성

- (규정 ③) (임시사택 수용 규모가 이전인원 40% 이내-이후) 이전시기 이후에 임시사택 인원이 변경된 사례 25건 중 임시사택의 수용 규모가 이전인원의 40% 이내(경미한 변경)인 사례는 20건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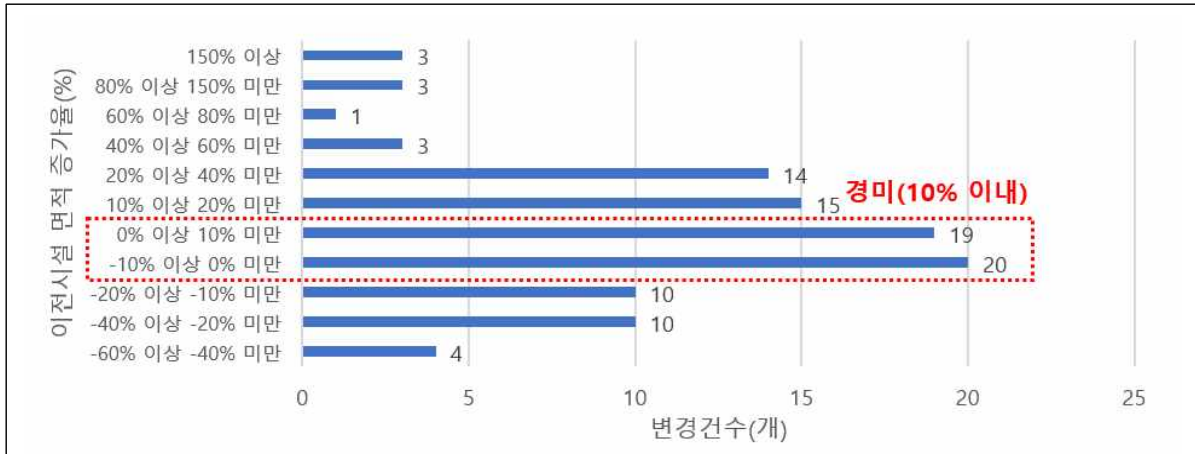
그림 Ⅲ-20 | 이전인원 대비 임시사택 규모 비율 분포(이전시기 이후 변경)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전시설-이전) 이전시기 이전에 이전시설(총계) 규모를 변경한 사례는 총 108건임
  - 이전시설 규모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총 6건(3.6%), 이전시설 규모가 증가한 사례는 58건(51.9%), 감소한 사례는 44건(40.7%)임
  - 이전시설 규모를 10% 범위 안에서 변경한 경우(경미한 변경)는 39건(36.1%)이며, 10%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는 63건(61.8%)임
  - ※ 이전시설 규모가 신규 책정된 사례 6건에 대한 비율은 고려하지 않음
  - -10% 이상 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한 사례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0% 이상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한 사례가 19건으로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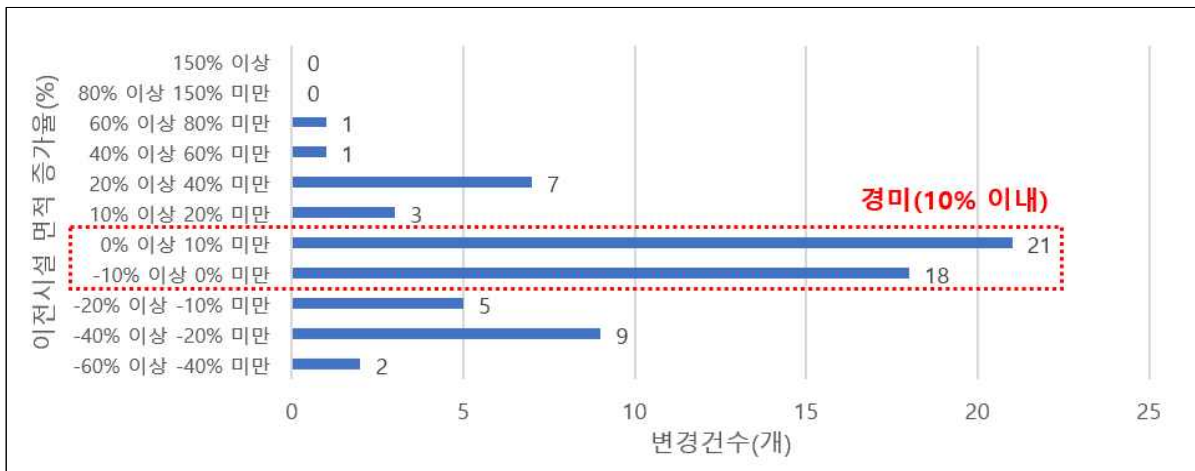
그림 Ⅲ-21 | 이전시설 규모 변경 비율별 분포(이전시기 이전 변경)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전시설-이후) 이전시기 이후에 이전시설(총계) 규모를 변경한 사례는 총 67건임
  - 이전시설 규모가 신규 책정된 사례는 없으며, 이전시설 규모가 증가한 사례는 33건(49.3%), 감소한 사례는 34건(50.7%)임
  - 이전시설 규모를 10% 범위 안에서 변경한 경우(경미한 변경)는 39건(58.2%)이며, 10%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는 28건(41.7%)임
  - 0% 이상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한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 이상 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한 사례가 18건으로 뒤를 이음

그림 Ⅲ-22 | 이전시설 규모 변경 비율별 분포(이전시기 이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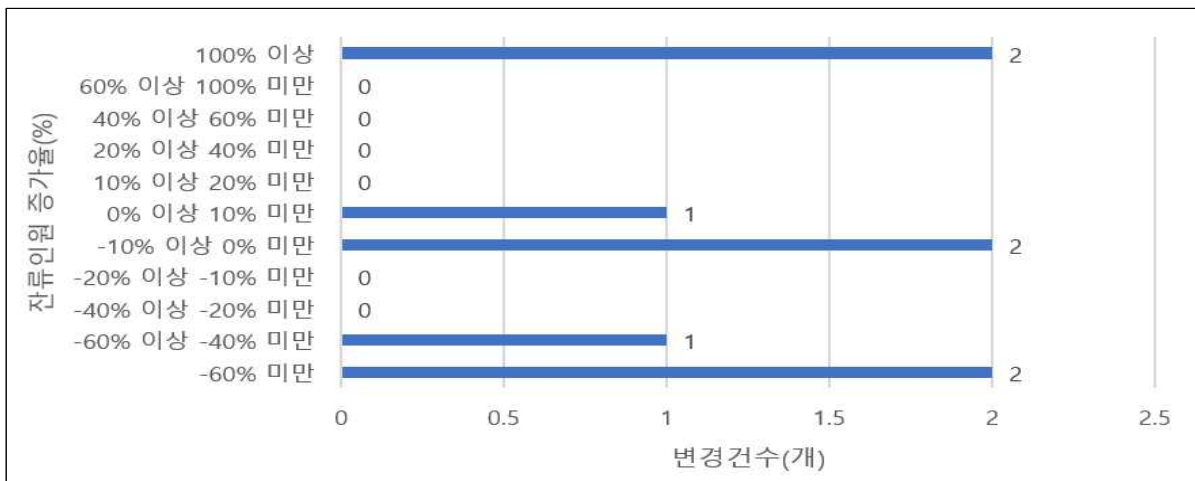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 (이전시설 세부항목—이전) 이전시설에는 업무시설, 특수시설, 기타시설 등의 항목이 포함
  - (업무시설) 이전시기 이전에 업무시설 면적을 변경한 사례는 총 101건이며, 이중 업무시설 면적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9건, 업무시설 면적이 증가한 사례는 47건, 감소한 사례는 45건임
    - \* 업무시설 면적이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36건(0% 이상 10% 미만은 13건, -10% 이상 0% 미만은 23건)
  - (특수시설) 이전시기 이전에 특수시설 면적을 변경한 사례는 총 62건이며, 이중 특수시설 면적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23건, 특수시설 면적이 증가한 사례는 28건, 감소한 사례는 11건임
    - \* 특수시설 면적이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11건(0% 이상 10% 미만은 6건, -10% 이상 0% 미만은 5건)
  - (기타시설) 이전시기 이전에 기타시설 면적을 변경한 사례는 총 34건이며, 이중 기타시설 면적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9건, 기타시설 면적이 증가한 사례는 14건, 감소한 사례는 11건임
    - \* 기타시설 면적이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2건(0% 이상 10% 미만 2건)
  
- (이전시설 세부항목—이후) 이전시설에는 업무시설, 특수시설, 기타시설 등의 항목이 포함
  - (업무시설) 이전시기 이후에 업무시설 면적을 변경한 사례는 총 59건이며, 이중 업무시설 면적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1건, 업무시설 면적이 증가한 사례는 26건, 감소한 사례는 32건임
    - \* 업무시설 면적이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33건(0% 이상 10% 미만은 15건, -10% 이상 0% 미만은 18건)
  - (특수시설) 이전시기 이후에 특수시설 면적을 변경한 사례는 총 42건이며, 이중 특수시설 면적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1건, 특수시설 면적이 증가한 사례는 20건, 감소한 사례는 21건임
    - \* 특수시설 면적이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15건(0% 이상 10% 미만은 9건, -10% 이상 0% 미만은 6건)
  - (기타시설) 이전시기 이후에 기타시설 면적을 변경한 사례는 총 21건이며, 이중 기타시설 면적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3건, 기타시설 면적이 증가한 사례는 12건, 감소한 사례는 6건임
    - \* 기타시설 면적이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된 사례는 5건(0% 이상 10% 미만은 4건, -10% 이상 0% 미만은 1건)

(2) 중대한 변경

- 지침에서 규정한 중대한 변경 사항은 수도권 잔류 관련 “인원”, “조직”, “시설”이며, 그중 관리카드를 통해 검토가 가능한 항목은 “수도권 잔류인원”, “수도권 잔류업무”, “수도권 잔류시설”임
- (수도권 잔류인원-이전) 이전시기 이전에 수도권 잔류인원을 변경한 사례는 총 10건으로, 전체 변경 사례(1,671건) 중 0.6%에 불과
  - 잔류인원이 신규 책정된 사례(수도권에 신규 인원잔류)는 총 2건(20.0%), 잔류인원이 증가한 사례(기존 잔류인원의 증가)는 3건(30.0%), 잔류인원이 감소한 사례는 5건(50.0%)임
  - \* 변경 이후 잔류인원이 0 값인 사례는 2건임
  - 잔류인원이 10% 범위 내 변경한 경우는 3건(30.0%)이며, 10% 이상의 범위의 경우는 7건(70.0%)임

그림 Ⅲ-23 | 잔류인원 변경 비율별 분포(이전시기 이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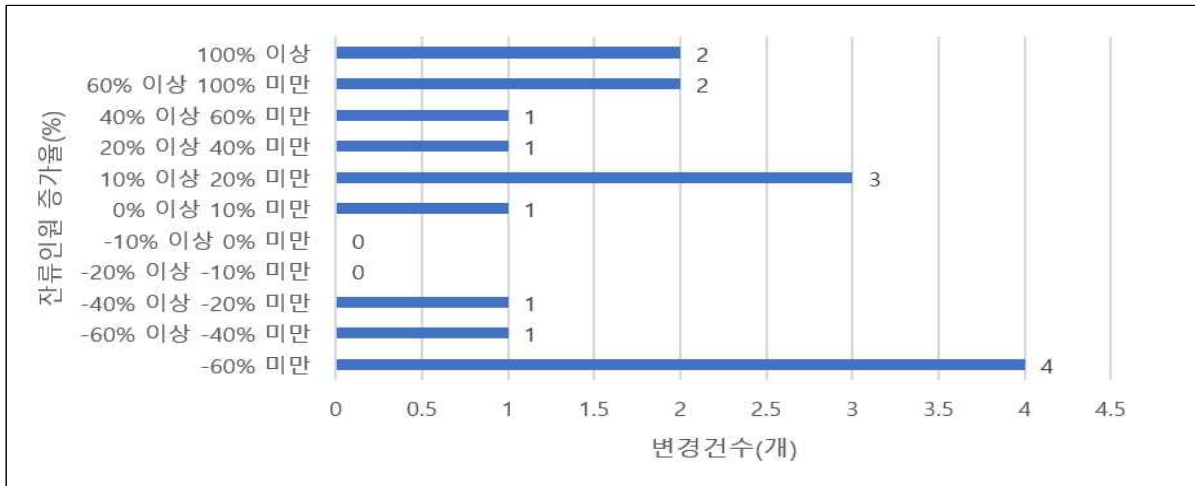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작성

- (수도권 잔류인원-이후) 이전시기 이후에 수도권 잔류인원을 변경한 사례는 총 24건으로, 전체 변경 사례(1,165건) 중 2.1%에 불과
  - 잔류인원이 신규 책정된 사례(수도권에 신규 인원잔류)는 총 8건(33.3%), 잔류인원이 증가한 사례(기존 잔류인원의 증가)는 10건(41.7%), 잔류인원이 감소한 사례는 8건(33.3%)임

- \* 변경 이후 잔류인원이 0 값인 사례는 3건임
- 잔류인원이 10% 범위 내 변경한 경우는 1건(4.2%)이며, 10% 이상의 범위의 경우는 23건(95.8%)임

그림 Ⅲ-24 | 잔류인원 변경 비율별 분포(이전시기 이후 변경)



자료: 연구진 작성

- (수도권 잔류업무 변경-이전) 이전시기 이전에 수도권 잔류업무를 변경한 사례는 총 9건으로, 전체 변경 사례(1,671건) 중 0.5%에 불과

- 관리카드에 제시된 잔류업무 변경 사유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공단(2014.2 승인) 기금 운용
- 국립식량과학원(2014.11 승인) 작물육종유전자원보존 등

- (잔류업무 주요 내용) 잔류업무 내용을 기입한 기관은 28개이며, 총 59건의 사례를 기입했으며, 잔류업무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소재 기관과의 연계·협력”, “수도권 관련 업무 수행”, “총괄 기능 수행”, “국제협력사업 수행”, “수도권 소재 시설 운영 및 관리”, “교육” 등으로 요약

- (수도권 잔류업무 변경-이후) 이전시기 이후에 수도권 잔류업무를 변경한 사례는 총 15건으로, 전체 변경 사례(1,165건) 중 1.3%에 불과

- 한국전력공사(2018.1, 2021.7 승인) UAE 원전 건설, 사우디 원전, 해외사업, 빅데이터 법률 대응 등
- 국립공원공단(2019.6 승인) 항공대 운영
- 국토안전관리원(2018.1, 2021.5 승인) 중부권 안전진단, 하자심사분쟁조정, 시설물정보관리, 디지털혁신추진단
- 관세인재개발원(2011.7 승인) 탐지견 번식 및 훈련
- 국방기술품질원(2014.5 승인) 수도권 업체 품질보증 및 기술평가, 부품국산화 개발업체 지도

- 관리카드에 제시된 잔류업무 변경 사유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 (잔류업무 주요 내용) 잔류업무 내용을 기입한 기관은 39개이며, 총 101건의 사례를 기입했으며, 잔류업무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소재 기관과의 연계·협력”, “수도권 관련 업무 수행”, “수도권 소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IT 및 금융 관련 업무 수행”, “국제협력사업 수행”, “교육”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수도권 잔류시설 변경-이전) 이전시기 이전에 수도권 잔류시설을 변경한 사례는 총 5건으로, 전체 변경 사례(1,671건) 중 0.3%에 불과

- 관리카드에 제시된 잔류시설 변경 사유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공단(2014.2 승인) 강남사옥 일부 사용
- 국립식량과학원(2014.11 승인) 청사 활용

- (잔류시설 주요 내용) 수도권 잔류시설 내용을 기입한 기관은 21개이며, 총 47건의 사례를 기입했으며, 잔류시설 주요 내용은 “수도권 소재 청사·사옥 또는 지사·사무소”, “센터”, “교육원, 훈련동”, “극장, 미술관, 전시관 등”, “기숙사”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수도권 잔류시설 변경-이후) 이전시기 이후에 수도권 잔류시설을 변경한 사례는 총 12건으로, 전체 변경 사례(1,165건) 중 1.0%에 불과

- 관리카드에 제시된 잔류시설 변경 사유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전력공사(2021.7 승인) 아트센터
- 국립공원공단(2019.6 승인) 김포공항 임차
- 국토안전관리원(2018.1 승인) 임차청사
- 관세인재개발원(2011.7 승인) 탐지견 견사 및 훈련동
- 국방기술품질원(2014.5 승인) 기존 청사활용(국방연구원 내 사무실)

- (잔류시설 주요 내용) 수도권 잔류시설 내용을 기입한 기관은 23개이며, 총 39건의 사례를 기입했으며, 잔류시설 주요 내용은 “수도권 소재 청사·사옥 또는 지사·사무소”, “센터”, “교육원, 훈련동”, “극장, 미술관, 전시관 등”, “기숙사”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5) 최종 승인된 지방이전계획과 현재 현황의 상이 사항 및 사유

- 관리카드 항목 중 “지방이전계획(최종 승인 현황)과 현재 현황의 상이 사항 및 사유”를 검토하여 정리
  - (항목) ① 이전시설, 이전인원, 이전비용, 이전시기 등 지방이전 관련 변경 항목과 ② 잔류시설, 잔류인원, 잔류업무 등 수도권 잔류 관련 항목으로 구분
- ① 지방이전 관련 변경 항목에 대한 주요 상이 사항 및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이전시설) 조직개편, 연구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시설 면적 증가, 측량으로 인한 부지면적 증감, 정년퇴임 및 주택 구입 등으로 인해 이주직원용 숙소 수용 규모 감소 등
  - (이전인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원 증가, 기능·영역 확대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인원 증가 등
  - (이전비용) 설계변경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증감 등
  - (이전시기) 매각시기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연 등의 내용으로 요약
- ② 수도권 잔류 관련 변경 항목에 대한 주요 상이 사항 및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잔류인원) 수도권 고객(또는 교육)을 위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인력 확충 등
  - (잔류업무)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업무, 수도권 소재 기관과 연계한 업무, IT 및 금융, 국제협력 관련 업무, 그 외 이사회, 국회 대응 등의 업무 등
  - (잔류시설) 수도권 업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실, 스마트워크센터 등 운영, 수도권 인력을 위한 기숙사 운영, 조사사업 예산 절감 및 조사원 수급을 위해 조사센터 잔류 등

표 Ⅲ-7 | 최종 승인된 지방이전계획과 현재 현황의 상이 사항 및 사유

구분	주요사유
지방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숙사 증축/실내체육관 건립/업무지원시설 증축 등으로 인한 면적 변경</li> <li>- 국가정책 대응을 위한 시설 추가(사이버침해 대응을 위한 보안관제센터 설치)</li> <li>- 연구사업 확대에 의한 시설 면적 증가</li> <li>- 기존사업 폐지로 인한 시설 면적 감소</li> <li>- 업무시설 부족으로 인한 별도건물 내 추가 임차</li> <li>-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공간 확대 및 실험실 증축</li> <li>- 복합업무시설 공유지 매입으로 인한 시설 면적 추가</li> <li>- 이전시설 내 총 분양면적 조정</li> <li>- 실기실습형 연구 공간인 다목적관 증축</li> <li>- 기록물 보관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면적 증가</li> <li>-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설면적 변경</li> <li>- 특수시설(평가회의 참여자 대기공간) 추가로 인한 이전시설 면적 증가</li> <li>- 종전부동산의 확정측량으로 인한 면적 증감</li> <li>- 분원이 독립기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인원 증가로 임차지역 변경(건물 이전)</li> <li>- 지방이전 최초 승인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른 비용 증가로 면적 감소</li> <li>- 건축물대장 내 신고면적과 상이하여 부합되도록 수정</li> <li>- 기관 인력증가에 따른 유희공간 활용 업무공간 리모델링</li> <li>- 청사 진출입로의 국가(도로관리청)으로 이관으로 인한 면적 감소</li> <li>-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면적 감소</li> <li>-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부지면적 변동</li> <li>- 이주직원용 숙소 운영 기한 만료에 따른 운영 종료</li> <li>- 정년퇴임 등으로 인한 임직원의 숙소 수용규모 감소</li> <li>- 주차장 내 캐노피 설치 면적 증가(업무시설 외 면적 증가)</li> </ul>
이전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사업 수요 증대로 인한 연구사업 확대 예산 및 인원 증가</li> <li>- 분원 신설로 인한 인원 증가</li> <li>- 본사기능 및 영역 확대에 의한 인원 증가</li> <li>- 지방이전으로 인한 퇴사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인원 채용</li> <li>-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증가된 정원 및 현원 반영</li> <li>- 기관 통합으로 인한 이전 인원 증대</li> <li>- 관련 법안 개정에 따른 인력 증원</li> </ul>
이전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이전 관련 예산삭감</li> <li>- 임대보증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관련 비용 변경</li> <li>-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으로 인한 차입금 이자 발생</li> <li>- 종전부동산 매각금액의 증감</li> <li>-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재원조달 방법 변경</li> <li>- 감정평가일 경과로 인한 재감정평가 실시 및 매각 예정가격 감액</li> <li>- 종전부동산 면적 확대에 의한 부지매입비 증가</li> <li>- 이전대상 직원의 입/퇴사로 인한 이사비와 이주지원비 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체육관/업무공간/직장어린이집 (추가) 건립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li> <li>- 복합업무시설 공유지 매입비용 증가</li> <li>- 청사 부지면적 감소(확정측량 결과 감소)로 인한 비용 감소</li> <li>- 통합사옥 분양규모 변경에 따른 청사 건축비 변경</li> <li>- 다목적관 증축에 따른 건축비 증가</li> <li>- 기록물 보관시설 신축에 따른 건축비 증가</li> <li>-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li> <li>- 혁신도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대</li> <li>- 추가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취득세 등 세금 증대</li> <li>- 지방이전 최초 승인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li> <li>- 녹색시범사업의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추가비용</li> <li>- 이주직원용 숙소 매입 및 임원사택 임차 관련 승인 비용 부족에 따른 차입</li> <li>- 이주직원용 숙소의 보증금 상승</li> </ul>
	이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부동산 매각시기에 따른 변경</li> <li>- 토지보상 불만에 따른 원주민 이주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li> <li>- 설계변경에 의한 준공 지연</li> <li>- 신청사 화재로 인한 이전시기 연장</li> <li>- 공사 중 연약지반 치환 등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기간 연장</li> </ul>
수도권 잔류	잔류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인원 증원</li> <li>- 교육 인원 충원에 따른 잔류인원 증원</li> <li>- 예산 미확보로 인한 잔류인원 감소</li> <li>- 수도권 내 업무수요가 증대됨에 따른 잔류인원 증대</li> <li>- 기관통합으로 인한 잔류인원 증대</li> <li>- 수도권 고객 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업무지원</li> <li>- 사업운영을 위한 수도권 잔류(창업자 보육을 위한 교육시설)</li> </ul>
	잔류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조정 필요로 분쟁조정 회의가 주2회 개최됨에 따라 수도권 잔류 업무 확대</li> <li>- 대면이 필요한 업무로 인한 수도권 내 센터 운영 필요</li> </ul>
	잔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워크센터 운영</li> <li>- 지방이전 후 진행되는 수도권 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 회의실 임차</li> <li>- 수도권 내 업무수요가 증대됨에 따른 잔류시설 면적 증가</li> <li>- 대학원 옥상 창고 증축 및 어린이집 외부계단 지붕 공사로 인한 면적 증가</li> <li>- 지속적인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수도권 내 센터 유지</li> <li>- 순환근무자용 사택 임대</li> <li>- 서울 잔류시설로 인한 사무실 임차비용 발생</li> <li>- 지방이전 후 국토부 녹색건축업무 수행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li> </ul>

## 6) 분석결과의 종합

- 관리카드를 토대로 지방이전계획의 변경 사례에 대한 현황을 지방이전 관련 “경미한 변경” 항목과 수도권 잔류 관련 “중대한 변경” 항목으로 구분하여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경미한 변경 항목) 이전시기, 이전비용, 직원숙소, 임시사택, 이전시설 등
  - (중대한 변경 항목) 수도권 잔류 인원·업무·시설
- 본 연구에서는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경미한 변경 항목과 수도권 잔류 관련 중대한 변경 항목을 전체 시기, 지방이전 이전과 이후 시기로 구분하여 현황을 분석하였음
- 경미한 변경 항목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전시기)** 이전시기를 변경한 사례는 전체 2,836건 중 197건으로 7%를 차지하며, 경미한 변경(46%)에 비해 중대한 변경 비중(54%)이 높음. 전체 197건 변경 사례 중 이전시기 이전에 변경한 사례가 154건, 이전시기 이후에 변경한 사례가 43건임
    - \* 이전시기 변경 사례 중 2년(2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한 사례는 163건(83.1%)인데, 그중에서 이전시기 이전에 변경한 사례는 128건, 이전시기 이후에 변경한 사례는 35건으로 확인
    - \* 주요 변경사유 : 매각시기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연 등
  - **(이전비용)** 이전비용을 변경한 사례는 전체 2,836건 중 230건으로 8%를 차지하며, 경미한 변경(46%)에 비해 중대한 변경 비중(54%)이 높음. 전체 230건 변경사례 중 이전시기 이전에 변경한 사례가 146건, 이전시기 이후에 변경한 사례가 84건임
    - \* 이전비용이 신규 책정된 사례는 9건(3.9%), 이전비용이 증가한 사례는 121건(52.6%), 이전비용이 감소한 사례는 100건(43.5%)으로, 이전비용이 증가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
    - \* (이전비용 세부항목) 이전비용 세부항목별 변경 사례는 청사건축비(부지비 포함), 이주지원비, 이사비(기관, 개인), 숙소 건축 및 매입비, 청사임차보증금(관리비 포함) 순으로 확인
    - \* 청사건축비, 이사비, 숙소 건축·매입비는 증가한 사례가 다수였으며, 청사임차보증금, 이주지원비는 감소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
    - \* 주요 변경사유 : 설계변경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매각 지연 등에 따른 증감 등
  - **(직원숙소)** 직원숙소 규모를 변경한 사례는 전체 2,836건 중 60건으로 2%를 차지하며, 경미한 변경(29%)에 비해 중대한 변경(71%) 비중이 높음. 전체 60건 변경 사례 중 이전시기 이전에 변경한 사례가 24건, 이전시기 이후에 변경한 사례는 36건임
  - **(임시사택)** 임시사택 규모를 변경한 사례는 전체 2,836건 중 44건으로 2%를 차지하며, 경미한 변경(41%)에 비해 중대한 변경(59%) 비중이 높음. 전체 44건 변경 사례 중 이전

시기 이전에 변경한 사례가 19건, 이전시기 이후에 변경한 사례가 25건임

\* 주요 변경사유 : 정년퇴임 및 주택 구입 등으로 인해 이주직원용 숙소 수용 규모 감소 등

- **(이전시설)** 이전시설 규모를 변경한 사례는 전체 2,836건 중 175건으로 6%를 차지하며, 경미한 변경(46%)에 비해 중대한 변경 비중(54%)이 높으며, 이중 업무시설과 특수시설 면적을 변경한 사례가 다수로 확인. 전체 175건 변경 사례 중 이전시기 이전에 변경한 사례가 108건, 이전시기 이후에 변경한 사례가 67건임

\* 주요 변경사유 : 조직개편, 연구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시설 면적 증가, 측량으로 인한 부지면적 증감 등

☞ 경미한 변경 항목의 변경 사례는 전체 변경 사례의 약 2~8%를 차지했고, 모든 변경 항목에서 경미한 변경에 비해 중대한 변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전시기, 이전비용, 이전시설 규모는 이전시기 이전에 변경된 사례가 다수였으며, 직원 숙소 및 임시사택의 규모는 이전시기 이후에 변경된 사례가 다수로 확인

○ 수도권 잔류 관련 중대한 변경 항목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잔류인원)** 수도권 잔류인원을 변경한 사례는 전체 2,836건 중 34건으로 1%를 차지하며, 이중 다수가 지방이전 이후 변경된 사례(24건)로 대부분 잔류인원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

\* 주요 변경사유 : 수도권 고객(또는 교육)을 위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인력 확충 등

- **(잔류업무)** 수도권 잔류업무를 변경한 사례는 전체 2,836건 중 24건으로 1%를 차지함. 전체 24건 중 이전시기 이전에 변경한 사례는 9건, 이전시기 이후에 변경한 사례는 15건임

\* 주요 변경사유 : 이사회, 국회 대응 등의 업무 등

\* 주요 잔류업무 : 수도권 소재 기관과의 연계·협력, 수도권 관련 업무 수행, 수도권 소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IT 및 금융 관련 업무 수행, 국제협력사업 수행 등

- **(잔류시설)** 수도권 잔류시설을 변경한 사례는 전체 2,836건 중 17건으로 1%를 차지함. 전체 17건 변경 사례 중 이전시기 이전에 변경한 사례는 5건, 이전시기 이후에 변경한 사례는 12건임

\* 주요 변경사유 : 수도권 업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실, 스마트워크센터 등 운영, 수도권 인력을 위한 기숙사 운영, 조사사업 예산 절감 및 조사원 수급을 위해 조사센터 잔류 등

\* 주요 잔류시설 : 수도권 소재 청사·사옥 또는 지사·사무소, 센터, 교육원·훈련동, 극장·미술관·전시관, 기숙사 등

- ☞ 수도권 잔류 관련 중대한 변경 항목의 변경 사례는 전체 변경 사례의 약 1% 내외 수준으로, 경미한 변경 사례(약 2~8%)에 비해 변경 사례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
- ☞ 수도권 잔류인원, 업무, 시설은 이전시기 이후에 변경된 사례가 다수로 확인
- ☞ 잔류인원의 주요 변경 사유는 수도권 소재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 수도권 관련 업무 수요 증가 등임
- ☞ 잔류업무는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업무, 수도권 소재 기관과 연계한 업무, IT 및 금융, 국제협력 관련 업무, 그 외 이사회, 국회 대응 등의 업무 등으로 요약되며, 주요 변경 사유는 수도권 내 업무 수요 증대 등을 꼽음
- ☞ 잔류시설은 청사(지사·지역사무소 포함) 및 사무실(매입, 임차 등), 센터, 기숙사 등이었으며, 주요 변경 사유는 수도권 회의 수요 증대에 따른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등의 임차운영, 수도권 잔류인원용 기숙사 운영, 조사인력 수급을 위해 조사센터 운영 등이 꼽힘

### 3. 지방이전계획 변경 및 사후관리방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 의견수렴 개요

- 지방이전계획 변경 현황과 법령·지침에 관한 분석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지만, 이전완료 공공기관 및 소관부처 등 관계기관이 체감하는 지방이전계획 변경 및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과 관련한 이슈를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이전완료 공공기관(151개), 소관부처 등 관계기관의 담당자, 법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 서면과 2)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지방이전계획 변경 및 현행 사후관리 방식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으로써 기존 지방이전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도모하고자 함
- **(서면)** 소관부처 및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지방이전계획 변경 절차, 경미한 중대한 변경의 범위 등에 관한 의견수렴
  - 조사대상 : 이전완료 공공기관, 소관부처 (이전완료 공공기관 28곳 및 소관부처 1곳 응답)
  - 조사기간 : 2023년 5월 23일~6월 2일
  - 조사방법 : 정부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문으로 조사표 일괄 배포
  - 조사내용
    - ①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
    - ②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범위(경미한 변경)
    - ③ 수도권 잔류 관련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범위(중대한 변경)
    - ④ 기타(관리카드 항목·양식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FGI)** 지방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변경 항목,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조사대상 :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및 법률 전문가 등 4인
  - 조사시기 : 2023년 6월 8일
  - 조사방법 :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조사내용
    - ①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
    - ② 수도권 잔류 등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필요 여부 사안
    - ③ 법률 및 지침 관련 절차 간소화 법률 해석
    - ④ 기타(관리카드 항목·양식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2) 지방이전계획 변경에 대한 주요 의견

### ○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

-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생략) 수도권 잔류 관련 중대한 변경 이외에는 기재부(예산 관련)와 행안부·소관부처(조직 관련) 협의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생략 필요
- (지자체 사전협의 생략)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데, 이는 지자체는 이전지역의 활성화를 우선 고려하는 반면, 이전기관은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임. 이에 소관부처와 기재부 협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필요. 또는 중대한 변경 이외에는 지자체 협의 생략 필요

### ○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

- (지방이전 취지에 부합하는 항목 편입) 조기이전(이전시기를 12개월 이상 앞당긴 경우), 이전인원 증가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편입시킬 필요
- (이전시설 신축·증설 심의 불필요) 이전한 지역에 사옥, 숙소 등을 신축 또는 기존 승인 받은 시설에서 10% 이상 증설하는 경우는 심의 불필요
- (혁신도시 내 이전 이슈) 혁신도시 내 이전 시 기재부 예산 및 소관부처 협의가 완료된 경우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불필요하며, 지자체의 협의 또한 절차의 명확화 필요

“우리 기관은 OO시로 이전했을 당시 건물을 임차했었는데, 이후 신축하는 과정에서 동일 지자체 내 타 부지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균형위 심의 및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몰라서 굉장히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일 시·군 내 이전은 지방이전 취지에 부합하고, 기재부 예산 협의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균형위 심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인터뷰 중

- (변경 사항의 기준 불명확) 이전인원의 경우 현원인지, 정원인지 기준 불명확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범위

- (잔류업무·조직 제외) 수도권 잔류업무·조직 변경 관련해서는 심의가 불필요하고, 수도권에 잔류한 인원과 시설의 증가에 대해서만 심의가 필요

- (한시적 업무·인원 관련 사항 제외) 수도권 업무 수요 증가로 인해 정원 대비 10% 내의 한시적인 잔류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고 주무부처와 국토부 협의로 승인 가능하도록 조정 필요
- (지역사무소 제외) 수도권 잔류조직 중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업무 수요를 담당하는 ‘지역사무소’의 경우에는 당초 이전계획에 따라 본원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특히, 수도권에 잔류하는 지역사무소의 관할구역에 따른 명확한 잔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심의 제외 필요

“현행 지침에서는 본원, 지사, 지역사무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수도권 잔류인원을 늘릴 경우 모두 균형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수도권 인구 증가에 따라 필요 인력 수요도 증가하는 지사·지역사무소를 보유한 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와 같이 실제 수도권 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지사, 지역사무소는 균형위 심의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좋겠습니다.”

-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인터뷰 중

- (수도권 직원 숙소 제외) 수도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무소의 직원 숙소의 신축·증설 등에 관해서는 심의 불필요
- (수도권 잔류시설 중 스마트워크센터 허용)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등 근무형태가 유연화·다양화된 상황에서 수도권 출장근무자를 위한 일정 규모 미만의 스마트워크센터의 신설 또는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 관리카드 항목·양식 관련 의견

- (항목 간략화) 관리카드 작성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항목 간략화할 필요
- (세부기준 정비) 관리카드 작성 항목 중 이전인원(현원/정원, 계약직/정규직 등), 이전시설(업무/특수/기타시설) 등 작성시점과 세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작성 항목 개선) 지방이전이 완료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시기, 종전부동산, 이전비용, 재원조달방법, 이사비 등 이전과 관련한 항목을 작성하는 것을 제외할 필요
- (상이사항 및 사유 항목) 조직 및 시설 현황 등의 내용이 앞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필요

### ○ 법률 및 지침 해석상의 이슈 및 개정 필요성

- (법 개정 필요) 「혁신도시법」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개정 전에 머무르고 있음. 「혁신도시법」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언급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법을 개정할 필요

“ 「혁신도시법」 명칭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내용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에는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 법률 전문가 인터뷰 중

-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절차가 불필요한 사항이 다수 존재함과 동시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가 모호한 탓에, 쟁점이 되는 사안을 지침 개정(안)에 명시할 필요

### ○ 기타 건의사항

- (심의 절차 등 개선) 변경 필요성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이전계획 변경 심의 요청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소요 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심의를 정례화 필요
- (지방이전 10년 이상 경과한 기관에 한해 변경사항만 제출) 지방이전이 완료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관의 경우, 주기적인 관리보다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사후관리방안 운영 기한) 지침에서 사후관리방안을 지방이전의 효과를 확인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한 바 있어, 사후관리방안 운영 기한을 명시할 필요
- (제출·심의 양식 통일) 지방이전계획 변경 요청시, 대상기관(지자체, 소관부처, 국토부, 균형위)별 설명자료·심의요청서 등 양식이 달라 기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지자체 설명부터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양식 통일 필요

## 4. 법령 및 지침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 의견수렴 개요

- 본 연구에서는 법률 전문가 자문, 국토부 업무협의 등을 통해 법률 및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 관련 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전문가 자문회의)** 「혁신도시법」 및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률 전문가 자문
  - 자문위원 : 이준호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자문시기 : 2023년 7월 5일~7일, 12일, 17~18일, 20일, 25일
  - 조사내용 : ① 「혁신도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②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지침 변경(안)
- **(FGI) 지침 개정(안)에 관한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의견수렴**
  - 조사대상 :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5개 기관\*에서 총 10명 참석)  
\*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 조사시기 : 2023년 8월 16일
  - 조사방법 :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조사내용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지침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 ①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②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운영 및 현황에 대한 변경절차 및 변경사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변경사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한 변경사항(국토부장관 승인 필요)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부장관 승인이 모두 불필요한 변경사항
    - ③ 이전완료 공공기관 현황 제출 양식(기존 관리카드의 개정(안))
    - ④ 이전완료 공공기관 현황 변경 승인 요청시 제출자료 등

## 2) 법령 및 지침 개정(안)에 대한 주요 의견

### (1) 「혁신도시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주요 의견

#### ○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법에서 정의할 필요

- 현행 「혁신도시법」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개별 조문에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전제로 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명확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혁신도시법」에서 “이전공공기관”에 이미 이전을 한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

\* 지역인재채용(제29조의2), 지역발전기여(제29조의3), 우선구매(제29조의5), 지역기업우대(제45조의5), 국공유재산감면(제46조), 이주직원지원(제47조) 등의 규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이미 이전한 이후의 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 ○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계획 또는 방안”을 신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법」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사후관리계획 또는 방안”에 대한 수립절차, 내용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사후관리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을 신설하는 경우, 최초계획은 승인권자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계획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한 승인권자의 승인에 의하여 변경된 계획의 효력이 발생함

- 계획변경에 대한 승인은 최초 계획의 승인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계획변경의 경우에도 “계획수립 → 위원회 심의 → 승인권자 승인”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바, 다만 “경미한 변경”을 별도로 시행령상 규정으로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는 다수의 입법례가 있음

#### ○ 기존 지방이전계획 내용에 있어,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또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보다는 지방이전계획이 존재·유지되면서 간주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 ○ 사후관리계획 또는 방안을 수립하는 주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혁신도시법」 개정(안)에서는 사후관리계획 또는 방안 절차, 수립 주체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

## (2) 지침 개정(안)에 관한 주요 의견

-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지방이전계획 변경이 아닌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 다만,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협의를 생략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

- 지자체에서는 국토부 또는 소관부처와의 사전협의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기관(인원, 조직, 시설 등)을 이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

“기존 이전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할 때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지자체 협의 후에 소관 부처 협의 및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국토부 승인을 먼저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만 한 달 넘게 소요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인터뷰 중

- 정부 정책 등에 의해 현 소재지가 아닌 수도권 외 타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생략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정부에서 공공기관 본부 조직 효율화가 이슈임. 본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는 본사 인원을 현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절차 간소화 필요

“저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조직 효율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 인원 일부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 광역시나 세종시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 등 본사 인원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와 승인 절차가 생략되면 좋겠습니다.”

-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인터뷰 중

- 지침(안)에서 “그 외 수도권에 잔류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열리지 않아 현재 계류된 변경 건이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의 정례화, 심의 요청 후 최소 진행 기간(예. 6개월 이내) 등을 명시하는 안 등을 검토 요청

“지자체 및 소관부처 협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협의 이후에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인터뷰 중

- 변경 요청 건 관련해서 변경 요청 자료 제출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가 필요
- 정기보고 관련해서, 공공기관과 국토부가 가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 최종 변경내역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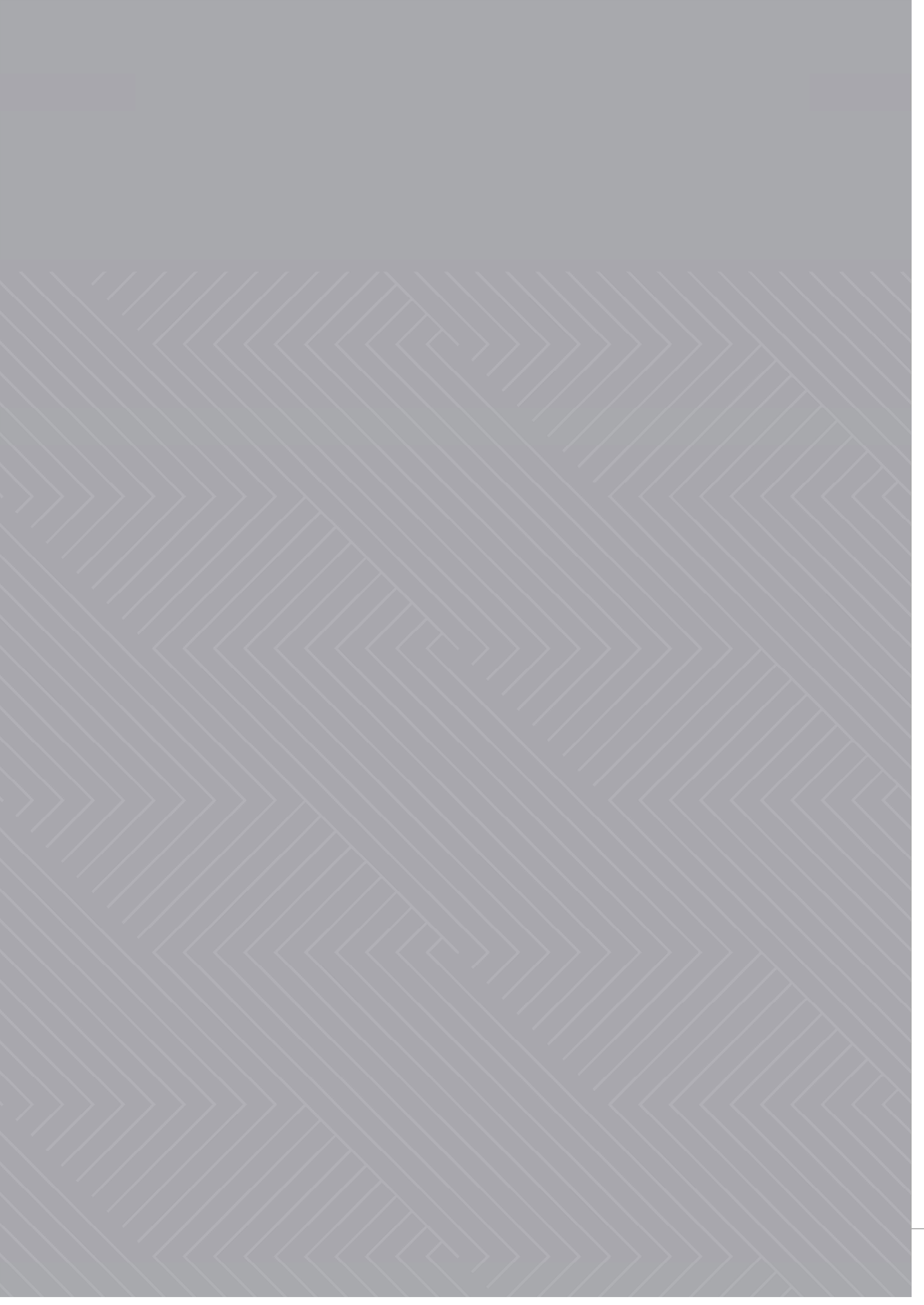
# IV

PART

## 현행 이 전 완료 공공 기관 사 후 관리 방 식 의 문 제 점 및 대 안



1. 이 전 완료 공공 기관 사 후 관리 제 도의 필 요 성 73
2. 이 전 완료 공공 기관 사 후 관리의 변 경 사 항 문 제 74
3. 이 전 완료 공공 기관 사 후 관리의 절 차 적 문 제 점 78
4. 위 반 사 항에 대 한 조 치의 이 슈 80
5. 관 리 카 드 작 성 상의 이 슈 81
6. 소 결 : 현 행 사 후 관리 방 식의 문 제 점 및 대 안 82



## 1.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제도의 필요성

-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방이전 이전의 지방이전계획 수립·변경을 다루고 있을 뿐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으로, 현재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있어 법적 공백이 존재
  - 현행 ‘지방이전계획’ 변경 절차와 항목은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계획할 당시에 수립된 것으로, 과연 지방이전이 완료된 현시점에도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 필요
  - 당초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목표로 수립하는 계획(「혁신도시법」 제4조 제2항)이므로, 지방이전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이 계획의 목적이 유지된다고 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전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각종 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는 등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현황 변경에 관한 절차 및 승인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있어 기존 “이전계획 변경” 방식을 취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이전계획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승인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관련 기관의 행정력 낭비가 우려
  - 변경 항목별 절차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의 구분이 불명확함

☞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즉, 기존의 이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니라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승인 형식으로 전환할 필요

☞ 이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만 관리하고, 그 외 지방이전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영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필요

## 2.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의 변경사항 문제

### 1) 기존 변경요인 적용의 문제

- 현행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는 주요 사항은 이전의 규모, 범위, 시기, 비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이전계획의 변경항목 중 다수는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루는 데 있어 무관한 경우가 많음
  - 사후관리의 영역으로 볼 때, 이전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할 실익이 있으며, 대부분 내용은 큰 실익이 없음

표 IV-1 | 현행 지방이전계획의 주요 사항

구분	사항	사후관리의 영역
「혁신도시법」 제4조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이전인원의 수도권 잔류는 관리 필요 - 이전지역의 비수도권으로 조직 이동도 일정 부분 관리 필요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 이전완료 이후이므로 실익 없음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이전완료 이후이므로 실익 없음
동법 시행령 제3조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 계획에 따라 이전 완료한 이후라 별도 실익은 없음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 지원대책에 대한 실익은 없음
	3. 사무소 부지매입비·신축비·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 이전비용에 대한 논의는 실익 없음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 수입 감소 대책은 지방이전계획을 통해 다루는 만큼 별도 실익은 없음

#### (1) 「혁신도시법」 시행령상 변경사항의 문제점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함
  - (기관명)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이전시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 (이전비용)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직원숙소·임시사택) ① 신축·매입·임차예산을 확보하여 변경승인 요청, ② 변경 규모가 이전인원의 10% 이내인 경우, ③ 지역위에 보고된 직원숙소·임시사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직원숙소 : 現 수도권 숙소 또는 순환근무자 수 중 큰 숫자 → 직원 수용규모 합계가 지방이전하기 전에 운영하던 숙소 규모와 최근 3년간 평균 순환근무자\* 수 중 큰 값 이내<sup>5)</sup> /임시사택: 이전인원의 40% 이내)
  - \* 순환근무자 보직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본사 전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이전시설) 승인받은 이전시설의 규모를 10% 범위 내에서 변경

○ (직원숙소, 임시사택, 이전시설 규모 내용의 갱신 필요성)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하여 지침 내용의 갱신이 필요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는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상세 내용은 법령이 아닌 국토부 내부 지침(’15.10.14.)에 명시되어 있음
- 국토부 내부 지침에서는 [붙임 3]을 통해 직원숙소, 임시사택, 이전시설 규모와 관련하여 국토부 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4.5.8 방침)를 명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17년 3월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및 직원숙소 운영기준 개선(안)’. ’21년 12월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 기준’ 등을 통해 임시사택의 명칭을 ‘숙소’, 직원숙소의 명칭을 ‘사택’으로 변경하고 임시사택, 직원숙소 등의 운영기준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토부 내부 지침에서는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 국토교통부(2021.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 기준”에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해당 문구를 지침에서 제시할 필요

**<국토교통부(2021.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 기준”>**  
 (순환근무 직원용 사택) 직원 수용규모 합계가 지방이전하기 전에 운영하던 숙소 규모와 최근 3년간 평균 순환근무자 수\* 중 큰 값 이내  
 \* 순환근무자 보직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본사 전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5) 국토교통부(2021.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 기준

- **(경미한 변경 사항의 개정 필요성)**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내용은 2013년에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2014년 국토부 방침에서 확정된 이후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
-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범위 적정성)** 이전대상 공공기관(151개)의 지방 이전이 마무리가 된 현시점에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경미한 변경 사항의 항목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예컨대, 이전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불필요 등

(2) 지침상 변경사항의 문제점

-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지침에서는 변경사항(수도권 잔류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인원	수도권에 신규 인원잔류, 기존 잔류인원의 증가, 잔류업무의 변경, 수도권에 직원을 1년 이상 장기과건 또는 출장 등
조직	수도권에 조직 신설, 기존 잔류조직의 변경, 수도권·서울사무소 설치 등
시설	수도권에 사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등) 등의 신축임대, 잔류 부동산 시설의 신축·증축·매각제외, 수도권에 직원숙소의 신축임대

- **(수도권 잔류 관련 사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 현재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잔류와 관련된 인원·조직·업무·시설과 관련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 필요
  - **(수도권 잔류인원·조직·시설 관련 사항의 불명확)** 지침에서 수도권 잔류인원·조직·시설 항목별로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수도권 잔류사항 세분화 및 구체화)** 수도권 잔류 사항을 사례에 따라 세분화 및 구체화 하여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방안 등 검토

☞ 지방이전계획 변경항목 중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적용할 실익이 없는 이전시기·비용 등과 달리, 이전 이후 필요한 지방 또는 수도권 잔류 인원, 조직,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방침 마련을 통해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필요

## 2) 공간영역의 고려 문제

- 기존 지방이전계획의 공간적 영역은 수도권 소재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주된 공간영역의 변경이 불가피
  - 기존 법에는 이전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관련된 변경 이슈는 부재하고, 지침에서만 수도권 잔류인원·조직·시설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
- (이전 이후 공간적 영역의 미스매치 발생)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 잔류와 관련한 이슈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범위 내에서 이전지역 외 지역(동일 시·군, 타 시·군)으로의 이전공공기관의 재이전 등 사후관리 시 검토가 필요한 공간적 영역이 다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 필요

표 IV-2 | 현행 공간영역의 이슈

구분		현재		문제점
		(법) 이전공공기관	(지침) 이전완료 공공기관	
수도권		-	· 잔류인원, 잔류업무, 수도권 소재 조직·사무소 신설 등	-
비수도권	이전지역 (혁신도시 및 개별 이전지역)	· 이전 규모, 범위 등	-	· 이전완료 이후 시설의 변경 이슈 등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여 법 제4조 준용
	이전지역 외 (동일 시·군)	-	-	· 타 지역의 이동, 조직 신설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여 법 제4조 준용
	이전지역 외 (타 시·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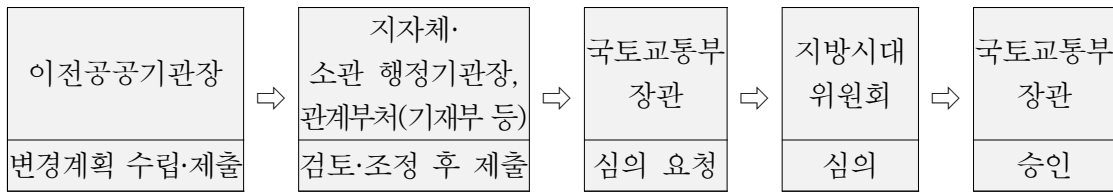
☞ 기존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수도권 잔류 이슈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범위 내에서 이전지역 외 지역(동일 시·군, 타 시·군)으로의 재이전 등 지방 이전 이후의 공공기관의 다변화된 활동을 고려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3.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의 절차적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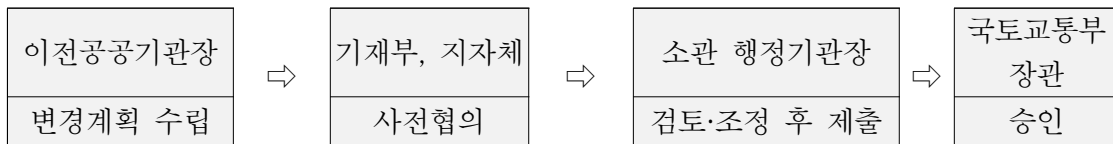
#### 1)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공백

-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방이전 이전의 지방이전계획 수립·변경을 다루고 있을 뿐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
  - 「혁신도시법」 제4조에서 이전을 계획하는 또는 이전 중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의 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침에서는 이전 후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방이전 이전의 지방이전계획 수립·변경을 다루고 있을 뿐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관한 내용은 부재하여, 현재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있어 「혁신도시법」 제4조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를 준용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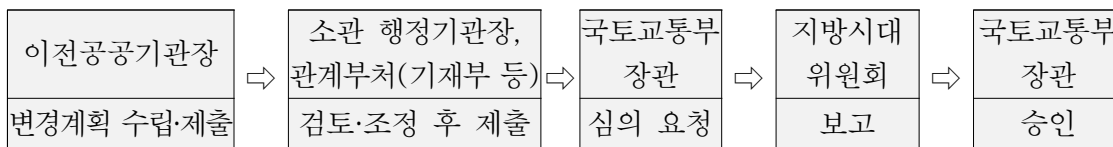
\* 지방이전계획 “중대한 사항” 변경절차( 「혁신도시법」 제4조, 지침)



\* 지방이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절차( 「혁신도시법」 제4조)



\* 법령개정, 대외공식회의(국무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또는 국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경우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지침)



☞ 법 조문 신설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

## 2) 비효율적인 변경절차 개선

- (비효율적인 변경절차 개선)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지자체·기재부(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소관부처와의 사전협의 후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재부·행안부 및 소관부처(조직 관련)와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불가피하여 기관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상황
  - 수도권 잔류와 관련한 변경사항은 기존 변경절차를 유지하되, 지방이전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등을 변경할 때에는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필요
  - 특히 경우에 따라,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생략 등 탄력적 적용이 필요한 차별적 절차 마련이 요구

☞ 법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변경 절차의 개선이 필요

-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운영상의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법령 및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변경 절차상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도모할 필요

##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의 이슈

### 1)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의 낮은 실효성

- 지침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이전계획 정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이 필요함에도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운영 중인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조치사항과 기관간 협조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정요청(국토부→소관부처→이전기관), 필요할 경우 이전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시정요청에도 시정하지 않는 기관은 감사원 통보, 정원·예산 협의시 불이익 조치(국토부·기재부·소관부처 공동)
  - (기관간 협조사항) 국토부는 이전기관의 정기보고(‘지방이전현황’) 자료 및 시정요청사항을 기재부·소관부처에 통보하여 해당자료를 공유하고, 기재부와 소관부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예산·정원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시정요청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확인 및 시정요청사항이 미이행된 경우 예산·정원 협의시 불이익 조치 시행
- 그러나 그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와 국토부·기재부·소관부처 등 기관 간 협조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행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낮은 상황

☞ 소관부처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 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제고 필요

## 5. 관리카드 작성상의 이슈

### 1) 관리카드 작성 항목의 불명확함

- 현 지침에서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이 매년 말 ①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기 승인 현황 vs. 현 이전현황), ②지방이전 공공기관 관리카드(최초, n차변경 승인내역, 현재), ③소관 행정기관별 공공기관 수도권잔류 해소 추진현황을 소관부처에 보고하고, 소관부처는 이를 국토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관리카드 작성 항목의 불명확함)** 작성 항목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경우가 다수 관찰됨. 이에 작성 항목별 기준을 정비하여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작성 기준이 본사인지, 본사와 사무소, 지사 등을 포함한 것인지 모호함
  - 이전인원(현원/정원, 정규직/공무직/계약직, 본사/사무소/지사 등), 이전시설(특수시설, 기타시설 정의가 모호함), 이전비용(이전청사임차비(보증금+5년간 임차료)가 보증금 및 5년간 임차료의 단순 총액인지, 평균액의 합산액인지 불명확) 등
- **(복잡한 관리카드 항목)** 관리카드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지방이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관리카드 항목을 간략화할 필요

### 2) 관리카드 작성 항목의 개선 필요성

- 관리카드 내 지방이전 세부 현황 항목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획하던 시기에 만들어져,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여건 변화에 맞게 관리카드 작성 항목이 개선될 필요
  - 지방이전과 관련한 항목(이전지역, 이전방법, 이전인원, 이전부지·시설, 이전비용, 재원조달방법, 종전부동산 등)은 이전을 계획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조사하는 방안 검토
  -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수도권 잔류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항목 재구성 필요

☞ 관리카드 작성 항목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방이전 완료 후의 공공기관의 운영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리카드 작성 항목의 간소화 및 재구성 필요

## 6. 소결: 현행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

- 앞선 지방이전계획 변경 현황 분석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IV-3 | 현행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식의 문제점 및 대안

구분		문제점 및 대안	
①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으로, 현재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있어 법적 공백이 존재	
	대안	☞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 ☞ 기존 이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닌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만 관리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의 변경사항 문제	② 기존 변경요인의 적용	문제점	- (「혁신도시법」 시행령)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는 주요 사항의 다수는 사후관리의 사항으로 다루는 실익이 없고, 경미한 사항의 각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불명확한 해석 및 부재한 사항이 존재 - (지침) 수도권 잔류 관련 사항에 대해 세분화 및 기타 비수도권 측면에서의 사후관리에 대한 변경요인 등 부재
		대안	☞ 이전 이후 필요한 지방 또는 수도권 잔류인원·조직·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여 기존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
	③ 공간영역의 고려 문제	문제점	- 기존 지방이전계획의 공간적 영역은 수도권 소재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전이 완료된 상황에서 비수도권 내 재이전 등 주된 공간영역의 변경이 불가피
		대안	☞ 수도권 잔류 이슈뿐만 아니라 수도권 범위 내에서 이전지역 외 지역(동일 시군, 타 시군)으로의 재이전 등 지방 이전 이후의 공공기관의 다변화된 활동을 고려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④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의 절차적 문제점	문제점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공백)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관한 내용은 부재하여, 현재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있어 「혁신도시법」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는 상황 - (비효율적인 변경절차) 기재부·소관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균형위(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불가피하여 기관의 행정력 낭비 발생	
	대안	☞ 법 조문 신설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법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변경 절차의 개선이 필요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문제점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의 낮은 실효성	
	대안	☞ 소관부처 관리체계 강화 등 현행 조치의 실효성 제고 필요	
⑥ 관리카드 작성	문제점	- 관리카드 작성 항목의 불명확함 및 관리카드 작성 항목의 개선 필요성	
	대안	☞ 관리카드 작성 항목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방이전 완료 후의 공공기관의 운영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리카드 작성 항목의 간소화 및 재구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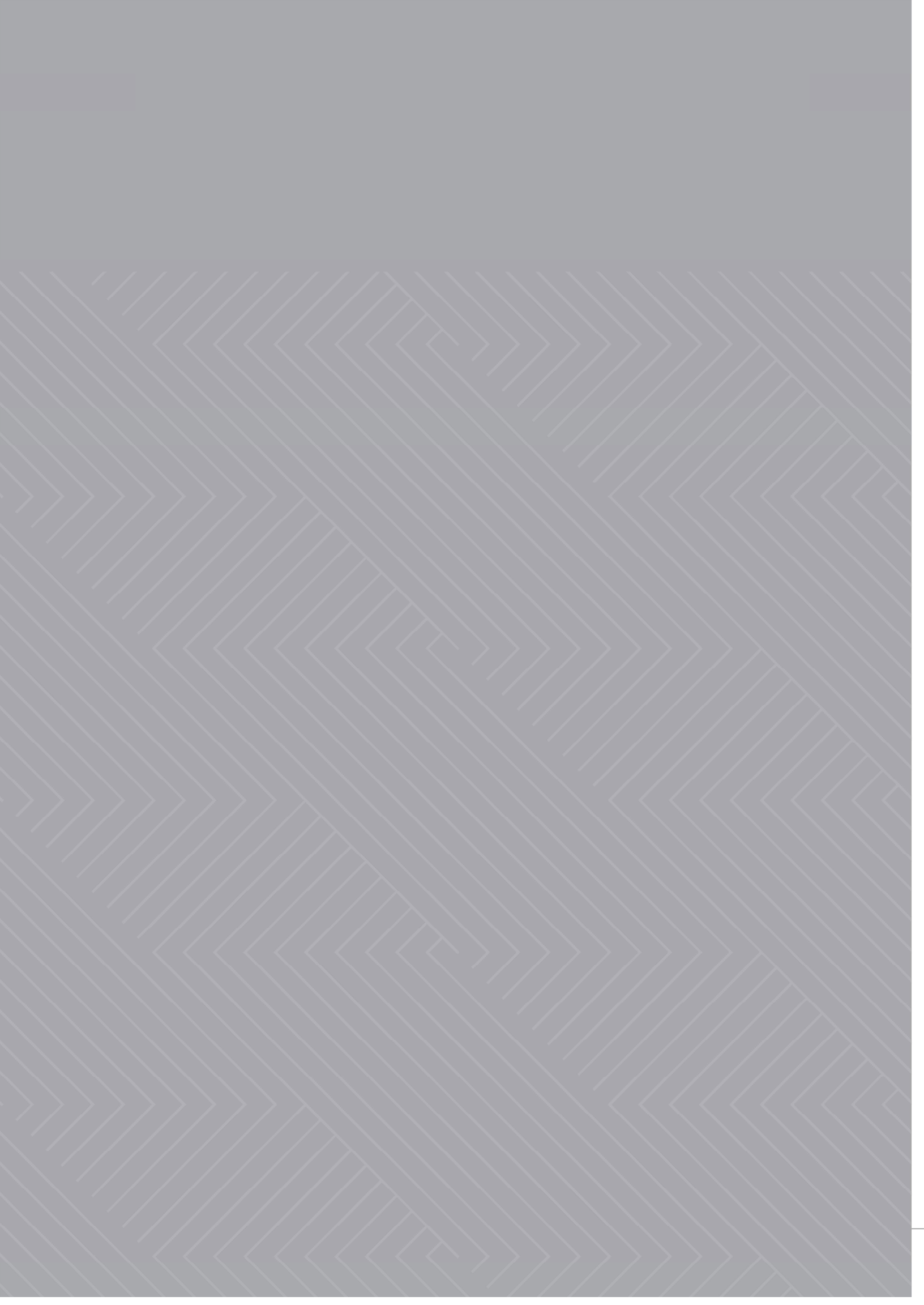


PART

#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개선 방향 및 법령·지침 개정(안)



1.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방향 85
2. 법령 및 지침 개정(안) 87



## 1.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방향

### 1) 현행 법령 및 지침상의 문제점

- (현행 법령상 문제점) ①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을 명시한 내용이 부재한 탓에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있어 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②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개별 조문에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을 전제로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혼동 야기
  - \* 지역인재채용(제29조의2), 지역발전기여(제29조의3), 우선구매(제29조의5), 지역기업우대(제45조의5), 국공유재산감면(제46조), 이주직원지원(제47조) 등의 규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이미 이전한 이후의 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
- 법률상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인지, 이전 완료한 기관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혁신도시법」에서 “이전공공기관”에 이미 이전을 한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현행 지침상 문제점) ①이전 완료 후에도 여전히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수립한 지방이전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개념상 모순이 발생하였고, ②지방이전 계획의 변경항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여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문의에 따른 관련 기관의 행정력 낭비 우려

### 2) 사후관리 개선 방향

- (기본 방향)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이전계획 변경 방식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Two-track 방식) 향후 지방 이전을 계획하고, 지방 이전 중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이전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적용하되, 이미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이전계획 변경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사후관리 방안) 사후관리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관리방식의 전환) 기존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닌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 활동 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

- (사후관리 항목의 규정)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이전 후 활동 중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항목(사후관리가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
- 원칙적으로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항목 외에 지방이전 목적 및 취지에 관련 없는 항목은 이전완료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함
- 본 연구는 상기한 사후관리 개선 관련 기본 방향과 방안에 기초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 관련한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제시

## 2. 법령 및 지침 개정(안)

### 1) 법령 및 지침 개정의 원칙 및 방향

- **(기본원칙)** 지방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항목 외에 지방이전 목적 및 취지에 관련 없는 항목은 이전완료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별 근거법령, 기타 개별법령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함
- **(사후관리 필요 영역)** 지방이전 취지를 고려하여 ‘인원·업무·조직’, ‘부동산’ 및 그 외 지방이전 취지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설정
  - (인원·업무·조직) 이전지역 외(수도권 및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지역) 이전 인원(업무·조직)의 잔류·변경, 신규 인원 및 조직의 배치·신설
  - (부동산) 이전지역 외(수도권 및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부동산 취득(매입·임대), 신축·증축, 종전부동산 매각 제외 등
  - (기타) 지방이전 취지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후관리 절차)**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기재부 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 소관부처 검토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상기한 사후관리 관련 기본원칙, 사후관리의 필요 영역 및 절차에 기초하여, 법령 및 지침 개정(안) 제시
  - **(원칙)** 지방이전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되, 수도권 잔류 등 지방이전 취지에 반하는 사항에 한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예외규정 규정 및 적용)** 지방이전계획 변경사례와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민원 사례 등을 토대로, 예외적으로 사후관리 영역 중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여 적용

## 2) 「혁신도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 (1) 「혁신도시법」 개정(안)

- (공통) 사후관리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조문 신설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시
- (대안 1) 기존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사후관리계획’을 규정하여 사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등을 명시함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장은 기존 지방이전계획에 사후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재량규정)
  - 제2항에 따라서 지방이전을 완료한 이후부터 지방이전계획은 “이미 소관 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은 사후관리계획”임을 규정 → 이러한 간주규정을 통해 지방이전계획은 지방이전완료 후 전혀 다른 변경절차를 가지는 ‘사후관리계획’으로 변화
- (대안 2)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관리방안’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이 관리방안은 소관 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전제로 함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관리방안 절차는 ‘소관 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 (대안 3)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관리방안’을 법률상에서 직접 명시하지 않으나, 지방이전 취지에 반하는 행위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함.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을 명시
  - 대안 2에서의 ‘소관 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음
  - 지방이전 취지에 반하는 행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대안별 순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것이 아니며, 이전 지역으로 이전한 이전공공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는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지방이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안별 각각의 조항을 취사선택하거나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 법령 개정(안)에서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이 정착 및 운영 현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은 필요하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항 조문을 신설하여, 제3항 본문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자체 승인)사항, 제3항 하단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사항, 관리지침 법적 근거를 제시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변경사항) 다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
  - 수도권에 신규 인원잔류, 기존 잔류인원의 증가, 잔류업무\*의 변경, 수도권에 직원을 3년 이상 장기파견 또는 출장 등
    - \*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업무,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 또는 수도권에 있는 시설 등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 그 밖에 기관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은 제외
  - 수도권에 조직 신설·이동, 기존 잔류조직의 변경, 수도권에 본사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 또는 본사 소속의 조직 운영,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한시조직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
  - 기존 지사·지역본부의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수도권에 사무공간 등의 신축·임대, 잔류부동산 시설의 신축·증축(매각 제외), 수도권 직원숙소의 신축·임대 등
  - 혁신도시 지구에 소재한 본사 인원(정원)·조직·시설이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군 외 지역으로 이전
    - \* 개별 이전 기관은 개별 이전한 기초지자체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은 필요하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는 불필요한 변경사항) 예외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
  - 기존에 수도권에서 일해온 비정규직이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어 잔류인원이 증가한 경우

- 3년 이내의 인원 장기파견(출장) 또는 잔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조직\*을 이동·신설
    - \* 국정과제 등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승인된 사례가 있는 사항에 대한 3년 이내 기한 연장(일부 인원 축소하는 변경도 포함), 잔류업무\*·조직의 변경
    - \*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업무,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 또는 수도권에 있는 시설 등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 그 밖에 기관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 이전완료 공공기관이 기존 본사 인원의 이동 없이(신규 정원 확보), 비수도권 타 시·군·자치구에 조직을 이동·신설하는 경우
  - 스마트워크센터\* 운영·개소 등
    -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출장자를 위한 원격근무용 사무실로서, 다른 이용 목적이 없고, 본사 인원이 상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만 한함(단, 스마트워크센터 관리인원 1명은 제외)
  - 국정과제, 재난 예방, 보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의 입지가 제한적인 점(이전지역 불가 및 이전지역 외 극히 일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이전완료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타 시·군·자치구에 부동산 취득, 신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
  - 법령개정, 대외공식회의 또는 국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경우
    - \* 국무회의 등 장관급 이상이 회의 구성원(주재 제외)으로 참여(사안별 별도 판단)
  - 인원·업무·조직 관련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연관되는 부동산
  - 부동산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연관되는 인원·업무·조직
-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및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그 밖에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표 V-1 | 「혁신도시법」 개정(안)

현행	대안 1	대안 2	대안3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2020. 6. 9., 2023. 6. 9.&gt;</p> <p>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p> <p>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p>	<p>&lt;신설&gt;</p> <p>제2조(정의) 생략</p> <p>2의2. “이전완료공공기관”이라 함은 이전공공기관 중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을 말한다.</p>	<p>좌동</p>	<p>좌동</p>

현행	대안 1	대안 2	대안3
<p>도시를 말한다. (생략)</p>			
<p>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20. 6. 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li> <li>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li> <li>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p> <p>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p>	<p>&lt;신설&gt;</p> <p>제4조의2(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의 사후관리계획)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이하, “지방이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에 지방이전 이후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 계획(이하, “사후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lt;신설&gt;</p> <p>제4조의2(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방안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라 이전을 완료한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완료 이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방안(이하, “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전기관의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li> <li>2. 수도권 잔류기관(이전완료공공기관의 조직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하지 않은 조직을 말한다)의 업무, 위치, 인원, 조직, 시설 등 규모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의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lt;신설&gt;</p> <p>제4조의2(이전완료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① 제4조제1항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을 완료한 이후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목적과 해당 기관의 소관법률 등에 부합하도록 해당 공공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p>

현행	대안 1	대안 2	대안3
<p>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3. 3. 23., 2018. 3. 20., 2020. 6. 9., 2023. 6. 9.&gt;</p>	<p>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지방이전을 한 날 이후부터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은 사후관리계획으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b>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방안을 수립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p>	<p>②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사항(제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내용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해당 기관의 설립감독에</p>

현행	대안 1	대안 2	대안3
	<p>③ 제1항 하단에도 불구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후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서 제출된 사후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p>	<p>③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방안으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중에서 지방이전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에 관하여 이전완료공공기관 관리방안을 수립·</p>	<p>관한 법령 등에 따라서 변경한다. 다만,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이전계획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③ 이전완료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지방이전 취지에 반하는 사항 등 <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요청서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p> <p>④ <b>소관 행정기관의 장</b>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b>변경요청서를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b></p>

현행	대안 1	대안 2	대안3
	<p>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p>	<p>변경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⑤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관리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p> <p>⑤ 그 밖에 이전완료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3) 지침 개정(안)

#### (1) 개정 배경

- 「혁신도시법」 제4조는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다루고 있으나, 이는 지방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에 적용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15.10)’ 지침을 마련하여 수도권 잔류 관련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 등을 마련
- 그러나 지방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고 「혁신도시법」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하는 것에 따른 모순이 발생했고, 지침상 지방이전계획 변경 항목에 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이 부재하여 관련 기관의 행정력이 낭비
- 기존 지침의 개정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한 변경 절차 및 항목 등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 지침 개정(안)을 제시함

#### (2) 사후관리 내용

- (사후관리 영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 달성 및 이전완료 후 기관 운영의 자율성·효율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사후관리 영역(인원·업무조직, 부동산, 기타)’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은 일반적인 관리체계\*에 따름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별 근거법령, 기타 개별법령 등
- (사후관리 절차) 사후관리 영역에 대하여 관계기관 사전협의, 소관부처 검토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
  - 사후관리 영역 외에는 일반적인 관리체계에 따라 기관 자율에 맡김
- (사후관리 지침 세부내용) 인원·업무·조직의 잔류·변경, 신규배치 등 관련 신청요건과 절차(사후관리 영역 중 예외 사항), 부동산 취득, 신축·증축 등 관련(사후관리 영역 중 예외 사항), 기타
  - 사후관리 영역에 대한 제외사항\* 예시 제시 등

- \* 기관 명칭 변경,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내 활동 및 본사의 정·현원을 변경, 지사·지역본부의 인원·시설·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운영 및 현황 정기보고) 지방이전계획 변경 내용을 담은 ‘주요 지방이전현황’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완료 공공기관은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운영 및 정착 현황(인원·조직·시설·수도권 잔류 등)’을 매년 말 소관부처에 보고하고, 소관부처는 취합·검토 후 국토부(혁신도시총괄정책과)에 제출토록 함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기관간 협조사항 등을 명시

표 V-2 | 사후관리 지침 개정(안)

<h2>II. 기본원칙</h2>											
<h3>1. 사후관리 영역</h3>											
<p>□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영역은 지방이전 취지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나머지 활동은 일반적인 관리체계*에 따름</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별 근거법령, 기타 개별법령 등</p> <p>1. (인원·업무·조직) 이전지역* 외(수도권 및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이전 인원(업무·조직)의 잔류·변경, 신규 인원·조직의 배치·신설 등</p> <p>*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해당 혁신도시, 기타 개별이전 기관은 해당 기초지자체</p> <p>2. (부동산) 이전지역 외(수도권 및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부동산 취득 (매입·임대), 신축·증축, 중전부동산 매각제외 등</p> <p>3. (기타) 지방이전 취지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h3>2. 사후관리 절차</h3>											
<p>□ (원칙) 사후관리 영역에 대하여 관계기관 사전협의, 소관부처 검토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이전완료 공공기관 변경승인 요청사항 정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기획재정부(예산),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소관부처 검토·조정 후 제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국토교통부 심의 요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지방시대위원회 심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padding: 5px;">국토교통부 승인</td> </tr> </table>	이전완료 공공기관 변경승인 요청사항 정리	⇒	기획재정부(예산),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	소관부처 검토·조정 후 제출	⇒	국토교통부 심의 요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승인
이전완료 공공기관 변경승인 요청사항 정리	⇒	기획재정부(예산),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	소관부처 검토·조정 후 제출	⇒	국토교통부 심의 요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승인	
<p>○ (예외)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p>											
<p>□ 사후관리 영역 외에는 일반적인 관리체계에 따라 기관 자율에 맡김</p>											

### Ⅲ. 사후관리 지침 세부내용

#### 1. 인원·업무·조직의 잔류·변경, 신규배치 등 관련

- (신청요건) 변경승인 요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요건의 경우 수도권은 별도 지침(「지방이전기관의 수도권 잔류기준(09.3)」)을 참고하며,
  - 비수도권은 국정과제 등 정책적 사항, 수도권 기준 신청요건, 기타 불가피성을 고려하되 수도권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개별 판단
- (절차) 기본원칙 중 사후관리 절차의 원칙 및 원칙에 대한 예외에 따르며, 사후관리 영역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
  - 기존에 수도권에서 일해온 비정규직이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어 잔류인원이 증가한 경우
  - 3년 이내의 인원 장기파견(출장) 또는 잔류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조직(인원이 본사 정원의 5%와 20명 중 작은 값 이하)을 이동·신설\*
    - \* 국정과제 등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승인된 사례가 있는 사항에 대한 3년 이내 기한 연장(일부 인원 축소하는 변경도 포함), 잔류 업무\*·조직의 변경
    - \*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업무,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 또는 수도권에 있는 시설 등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 그 밖에 기관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 법령 개정, 대외공식회의\* 또는 국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경우
    - \* 국무회의 등 장관급 이상이 회의 구성원(주재 제외)으로 참여(사안별 별도 판단)

- 이전완료 공공기관이 기존 본사 인원의 이동 없이(신규 청원 확보) 비수도권 타 시·군·자치구에 조직을 이동·신설하는 경우
- 부동산 관련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연관되는 인원·업무·조직

## 2. 부동산 취득, 신축·증축 등 관련

- (신청요건) 변경승인 요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요건의 경우 수도권은 별도 지침(「지방이전기관의 수도권 잔류기준(09.3)」)에 따르며,
  - 비수도권은 국정과제 등 정책적 사항, 수도권 기준 신청요건, 기타 불가피성을 고려하되 수도권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개별 판단
  - 인원·업무·조직과 관련 있는 경우 인원·업무·조직에 대한 신청요건 고려
  - 업무시설\*의 면적은 기준(56.53m<sup>2</sup>/1인)을 준수해야 함
    - 업무시설의 보조·저장·관리·편의시설 등 특수시설이 아닌 면적도 포함
- (절차) 기본원칙 중 사후관리 절차의 원칙 및 원칙에 대한 예외에 따르며, 사후관리 영역 중 아래 사항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
  - 스마트워크센터\* 운영·개소 등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출장자를 위한 원격근무용 사무실로서, 다른 이용 목적이 없고, 본사 인원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단, 스마트워크센터 관리인원 1명은 제외)
  - 국정과제, 재난 예방, 보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의 입지가 제한적인 점(이전지역 불가 및 이전지역 외 극히 일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이전완료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타 시·군·자치구에 부동산 취득, 신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
- 법령 개정, 대외공식회의\* 또는 국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경우
  - 국무회의 등 장관급 이상이 회의 구성원(주재 제외)으로 참여(사안별 별도 판단)
- 인원·업무·조직 관련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연관되는 부동산

### 3. 기타

- (요건·절차) 사후관리 영역에서 제시된 사항에 따라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등에 필요시 적용하며, 아래 사항에는 기타 적용
  - 이전지역 내외 순환근무자·신규채용 직원용 사택, 이주직원용 숙소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사후관리 영역에 포함하며, 사후관리 절차의 예외 적용(세부사항은 관련 기준\*에 따름)
    - \*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 운영 기준(2021.12)」,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 기준(2021.12)」

#### 4) 지방이전계획 위배시 제재 방법 마련

- 지침 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의 개정 방향
  - (현행 지침) 현행 지침에서는 ①정기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지방이전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기관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국토부→소관부처→이전기관’의 과정을 통해 시정을 요청, ②필요한 경우 이전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③시정요청에도 시정하지 않는 기관은 감사원 통보, 정원·예산 협의시 불이익 조치(국토부·기재부·소관부처 공동)
- 지침 개정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등 소관부처의 관리체계 강화

#### 5) 관리카드 개선(안)

- 관리카드 내 “지방이전 세부 현황” 내 조사항목별 기준을 정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전완료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에 부합하도록 관리카드 항목을 간략화 및 재구성
- (이전 예정 또는 이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수도권 잔류 관련 항목들로 구성
  - (지방이전 관련 항목) 이전시기, 이전지역, 이전방법, 이전인원, 이전부지 및 시설, 이전비용, 채용조달방법, 종전부동산, 이주직원용 숙소, 순환근무자용 사택 등
  - (수도권 잔류 관련 항목) 수도권 잔류인원, 잔류시설 등
- (이전완료 공공기관) 기존 관리카드 내 지방이전 관련 항목들은 간략화하고,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운영 및 정착 현황 중심으로 항목 재구성
  - (기본 항목) 기관명, 소관부처, 청사 소재지, 개별이전 여부, 이전시기 등
  - (운영 및 정착 현황 관련 항목) 인원(정원, 현원, 상시고용인원 등), 정착부지·시설, 이주직원용 숙소, 순환근무자용 사택 등
  - (수도권 잔류 관련 항목) 잔류인원(승인인원, 실제인원 등), 잔류조직, 잔류업무, 잔류시설·부동산
  - 운영 및 정착 현황 변경 사유, 애로사항 등

표 V-3 | 이전완료 공공기관 현황 제출 양식 개선(안)

이전완료 공공기관 현황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정착 현황					
구분	최종 지방이전계획액 ('00.00.00)	직전 현황 ('00.00.00 기준)	현재(요청) 현황 ('00.00.00 기준)	비고	
기본 항목					
기관명		□□□□□□			
소관부처		□□□□□□			
기관유형	공기업 / 충청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				
당초 청사 등 소재지	서울 서초구				
이전 소재지	충북 진천				
개발이전 여부	○ / X				
이전시기(실제 이전완료)	2013-12				
운영 및 현황					
인원(명)					
- 정원(합계)	420	420	420		
* 본사 / 지사-지역본부 / 기차	100 / 300 / 20	100 / 300 / 20	100 / 300 / 20		
- 현원(합계)	420	420	415		
* 본사 / 지사-지역본부 / 기차	90 / 320 / 10	100 / 300 / 20	95 / 300 / 20		
- 상시고용인원(합계)	500	500	490		
* 본사 / 지사-지역본부 / 기차	120 / 340 / 40	120 / 340 / 40	110 / 340 / 40		
정확부지(m <sup>2</sup> )	1,000	1,300	1,300		
정확시설(m <sup>2</sup> , 연면적 합계)	17,000	18,000	18,000		
- 업무시설(신축/매입/임차)	신축/임차	신축	신축		
* 연면적(m <sup>2</sup> )	13,000	14,000	14,000		
(신축 10,000+임차 3,000)					
- 특수시설(신축/매입/임차)	매입	매입	매입		
* 연면적(m <sup>2</sup> )	4,000	4,000	4,000		
- 기타시설(신축/매입/임차)	-	-	-		
* 연면적(m <sup>2</sup> )	0	0	0		
이주지역을 축소					
- 확보방법(신축/매입/임차)	매입	매입	매입		
- 수용규모(세대수/총면적/인원)	3세대 / 80m <sup>2</sup> / 5명	3세대 / 80m <sup>2</sup> / 5명	4세대 / 100m <sup>2</sup> / 7명		
순환근무자를 사택					
- 확보방법(신축/매입/임차)	-	-	-		
- 수용규모(세대수/총면적/인원)	0	0	0		
신규채용직원을 사택					
- 확보방법(신축/매입/임차)	신축	신축	신축		
- 수용규모(세대수/총면적/인원)	10세대 / 300m <sup>2</sup> / 14명	10세대 / 300m <sup>2</sup> / 14명	10세대 / 300m <sup>2</sup> / 14명		
- 지역상생내역	지역특화산업 지원 (연 0억, 총 0억)	지역특화산업 지원 (연 0억, 총 0억)	지역특화산업 지원 (연 0억, 총 0억)		
수도권 잔류 현황					
잔류인원(명)					
- 승인인원(정원/현원)	10/0	10/0	10/0		
* 실제인원(정원/현원)	10/8	10/8	8/6		
- 미승인인원(현원)	0	0	0		
잔류조직(승인)	□□□	□□□	□□□		
- 잔류조직(미승인)	없음	없음	없음		
잔류업무(승인)	□□□	□□□	□□□		
- 잔류업무(미승인)	없음	없음	없음		
잔류시설-부동산(승인) (명칭/위치/확보/규모)	수도권사무소/인천 미추홀구/임차/ 1개 등, 300m <sup>2</sup>	수도권사무소/인천 미추홀구/임차/ 1개 등, 300m <sup>2</sup>	수도권사무소/인천 미추홀구/임차/ 1개 등, 300m <sup>2</sup>		
- 잔류시설-부동산(미승인) (명칭/위치/확보/규모)	없음	없음	없음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관련 현황(기승인사항 있는 경우 관련 사항)					
잔류인원(명)					
- 승인인원(정원/현원)	10/0	10/0	10/0		
* 실제인원(정원/현원)	10/8	10/8	8/6		
- 미승인인원(현원)	0	0	0		
잔류조직(승인)	□□□	□□□	□□□		
- 잔류조직(미승인)	없음	없음	없음		
잔류업무(승인)	□□□	□□□	□□□		
- 잔류업무(미승인)	없음	없음	없음		
잔류시설-부동산(승인) (명칭/위치/확보/규모)	□□사무소/□□시 □□구/임차/ 1개 등, 300m <sup>2</sup>	□□사무소/□□시 □□구/임차/ 1개 등, 300m <sup>2</sup>	□□사무소/□□시 □□구/임차/ 1개 등, 300m <sup>2</sup>		
- 잔류시설-부동산(미승인) (명칭/위치/확보/규모)	없음	없음	없음		
운영 및 현황 변경사항					
변경사항	□□□	□□□	□□□		
* 부지, 시설 등은 본사(주사무소) 기준 * 경력현황 양식의 세부사항, 형태(한글, 역셀) 등은 업무 수행시 변경 가능					
<input type="checkbox"/> 애로사항					
○ ~~~~~					
<input type="checkbox"/> 담당자 연락처					
(제출시점 기준)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5.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2021.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 기준.

국토교통부. 2021.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사택 운영 기준.

부록 1.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관계기관 담당자 의견수렴 개요

---



##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관계기관 담당자 의견수렴

### □ 과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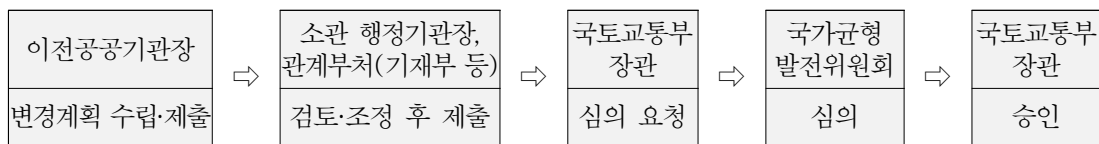
- 국토연구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연구(발주기관: 국토교통부, 2023.3~8)”를 수행 중임
- 연구의 목적은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변경 현황과 관련 법·지침\*을 토대로 현행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한 현안과 이슈를 도출하고,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과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임

\* (법령) 「혁신도시법」 과 동법 시행령, (지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 방안(‘15.10월)

### □ 조사목적

- 소관부처 및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① 변경절차, ②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의 범위, ③ 지방이전계획 변경시 균형위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범위 등(수도권 잔류), ④ 기타(관리카드 작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①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혁신도시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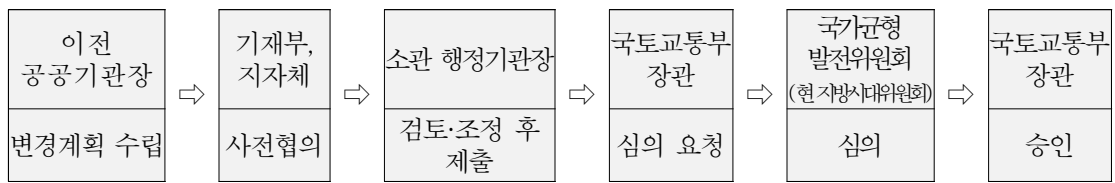
####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범위

<p>&lt;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관명)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li> <li>2. (이전시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li> <li>3. (이전비용)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li> <li>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li> </ol>
<p>&lt;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직원숙소·임시사택) ① 신축·매입·임차예산을 확보하여 변경승인 요청, ② 변경규모가 이전인원의 10% 이내인 경우, ③ 균형위에 보고된 직원숙소·임시사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직원숙소 : 現 수도권 숙소 또는 순환근무자 수 중 큰 숫자 / 임시사택 : 이전인원의 40% 이내)</li> <li>6. (이전시설) 승인받은 이전시설의 규모를 10% 범위 내에서 변경</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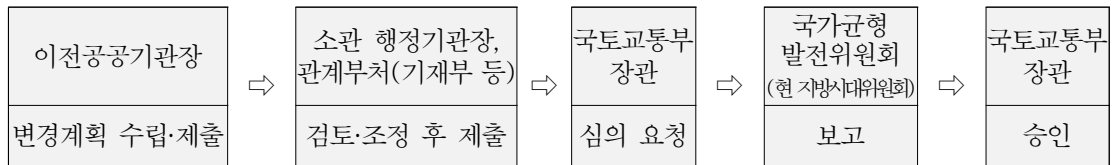
③ 수도권 잔류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범위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15.10)

인원	수도권에 신규 인원잔류, 기존 잔류인원의 증가, 잔류 업무의 변경, 수도권에 직원을 1년 이상 장기파견 또는 출장 등
조직	수도권에 조직 신설, 기존 잔류조직의 변경, 수도권·서울사무소 설치 등
시설	수도권에 사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등) 등의 신축임대, 잔류 부동산 시설의 신·증축·매각 제외, 수도권에 직원숙소의 신축임대

-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수도권 잔류)



- 법령 개정, 대외공식회의(국무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또는 국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경우의 변경절차



- <붙임>의 양식에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제도개선 의견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조사방법 및 대상

- 국토교통부 전자문서시스템 활용하여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조사표 일괄 배포

□ 조사기간

- 2023년 5월 23일~6월 2일

□ 조사양식

- 조사양식은 <붙임>을 참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과업 담당자 : 최OO 부연구위원(044-960-0167), 김OO전문연구원(044-960-0168))

**붙임**

**지방이전계획 변경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 의견 수렴(양식)**

작성자 일반정보			
기관명	부서명	성명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제안			
① 심의가 필요한 사항의 범위	인원	- (예시) 수도권 잔류업무 변화에 관해서는 심의 불필요 등	
	조직	- (예시) 기존 잔류조직 변경 관련해서는 심의 불필요 등	
	시설	- (예시) 소관부처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심의 불필요 등	
②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범위	- (예시) 조기이전과 잔류인원 추가이전 등은 심의가 불필요 등		
③ 지방이전계획 변경절차	- (예시) 중대한 변경 이외에는 소관부처(필요한 경우 기재부 협의) 검토·조정 이후 균형위 심의 절차 생략 필요 등		
④ 관리카드 항목 양식 등	- (예시) 지방이전이 완료된 기관에 대해서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항목 삭제 필요 등, 인원(현원/정원, 계약직/정규직 등) 작성 기준이 모호함, 작성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어 간략화할 필요 등		
⑤ 기타 건의사항	- 자유롭게 작성		



부록 2. 사후관리 지침(안) 관련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의견수렴 개요

---



## 이전완료 공공기관 사후관리 지침(안)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 의견수렴

2023.8.16

### □ 과업개요

- 국토연구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연구(발주기관: 국토교통부, 2023.3~8)”를 수행 중임
- 현행법상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부재하고, 국토부가 마련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15.10)’ 지침에서는 지침의 적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
  - \* 지방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변경절차 진행시 지방이전을 계획할 당시에 수립한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따른 모순 발생, 지방이전계획 변경 항목에 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 부재 등
- (목적)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 달성 및 이전완료 후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방안과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
  - \* (법령) 「혁신도시법」 과 동법 시행령, (지침)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 방안(‘15.10월)

### □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 의견수렴 개요

- (목적) 기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15.10)’의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이전완료 공공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
- (논의사항)
  -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운영 및 현황 변경절차
  -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운영 및 현황 변경사항(인원(업무), 조직, 시설, 혁신도시 등)
    - 1)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변경사항
    - 2)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한 변경사항(국토부 장관 승인 필요)
    - 3)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장관 승인이 모두 불필요한 변경사항
  - [붙임 1] 이전완료 공공기관 현황 제출 양식(기존 관리카드의 개정(안))
  - [붙임 2] 이전완료 공공기관 현황 변경 승인 요청시 제출자료



